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호주

2018







본 안내서는 호주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호주세법 등을 2018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호주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원



| 개관 및 현황 | ·· 1 |
|---|---|
| 2. 책자의 구성과 범위 3. 호주 국가현황 및 역사 4. 호주 정치 현황 | · 4 · 5 · 9 |
| 국제조세 ····· | 13 |
| 2.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 APA) 3. 상호합의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 MAP) 4. 조세조약(Tax Treaty) 5. 다국적 조세회피 방지법 (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 MAAL) 6.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 : DPT) | 20 25 28 30 32 |
| 개인소득세 | 35 |
| 2. 세율 및 과세표준 3.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4. 신고 및 납부 5. 의료부담금(Medicare Levy) | 38 42 44 46 |
| | 1. 안내책자 발간 배경 2. 책자의 구성과 범위 3. 호주 국가현황 및 역사 4. 호주 정치 현황 5. 호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 2.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 APA) 3. 상호합의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 MAP) 4. 조세조약(Tax Treaty) 5. 다국적 조세회피 방지법 (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 MAAL) 6.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 : DPT) 7. 조세회피방지 T/F(Tax avoidance taskforce) 운영 |

| IV. | 법인세 | 47 |
|-----|--|----|
| | 1. 납세의무자 | |
| | 2. 회계처리 방법 | |
| | 3. 법인세 세율 | 49 |
| | 4. 법인세 산출 | 51 |
| | 5.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 55 |
| | 6. 세무조정과 손실의 공제 | |
| | 7. 법인세 신고납부 | 57 |
| | | |
| V. | 재화서비스세 | 59 |
| | 1. 도입배경 | 60 |
| | 2. 개요 | 60 |
| | 3. 공급과 매입 | 60 |
| | 4. 세금계산서(Issuing tax invoices) ······ | 63 |
| | 5.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64 |
| | 6. 호주의 사업자등록번호(ABN) ······ | 65 |
| | | |
| VI. | 자본이득세 | 67 |
| | 1. 개요 | 68 |
| | 2. 과세대상 자산 및 면제대상(CGT assets) | 68 |
| | 3. 과세대상 사건(CGT events) ······ | |
| | 4. 롤오버(Rollover) ····· | |
| | 5.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 | |
| | 6. 비거주자의 CGT ··································· | |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호주)

| VII. | 기타세제, 지방세, 원천징수 | 73 |
|-------|--|-----|
| | 1. 기타세제 | 74 |
| | 2.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 | 75 |
| | 3. 지방세 | 77 |
| | 4. 원천징수(Pay As You Go) ······· | 80 |
| VIII. | 납세성실도 관리방안 및 조세 불복제도 | 83 |
| | 1. 납세성실도 관리방안 | 84 |
| | 2. 불복제도 | 88 |
| IX. | 한·호주 FTA와 호주 투자 | 91 |
| | 1.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 | 92 |
| | 2. 호주 투자 환경 및 투자 정책 | 94 |
| | 3. 주요 투자법 내용 | 101 |
| | 4. 호주 투자 진출 형태 | 103 |
| 부 | 록 | |
| | 1. 무역투자 관련 호주 주요 유관기관 웹사이트 | 106 |
| | 2. 호주의 한국기업 진출현황 | |
| | 3 하ㆍ ㅎ주 조세조약 저무 | 100 |

개관 및 현황

I

- 1. 안내책자 발간 배경 / 2
- 2. 책자의 구성과 범위 / 4
- 3. 호주 국가현황 및 역사 / 5
 - 4. 호주 정치 현황 / 9
- 5. 호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10





1/

안내책자 발간 배경



□ 호주에 대한 경제적 관심 증가

- 그동안 호주는 많지 않은 인구로 인한 높지 않은 구매력, 지리적 위치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제조공장 설치 부적합 등의 이유로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관심지역이 아니었음.
- 하지만, 2014년 12월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을 계기로 경제적으로도 호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6년 및 2017년 대호주 투자건수와 신규법인 수는 각각 118건과 93건, 38개와 23개로 2014년 71건, 15개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한국수출입은행 기준)
 - 호주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 교역 파트너로 호주 주요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지분참여가 활발하며, 최근에는 민간투자기금 및 공적연기금 등의 호주 내 상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 2018년은 한·호주 FTA 발효 5년차로 추가 41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없어져, 양국 간 전체 교역 품목의 99.4%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호주 진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호주 정부의 국제조세 관련 규정 강화

- 호주 정부는 국가 간 상이한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6월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규정을 개정(신설· 강화)*하였음.
 - * Subdivisions 815-B, C, D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ITAA) 1997



-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2월 다국적 조세회피 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MAAL)을 제정하였음.
 - 이 법은 2016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현재는 연간 전세계 수입 10억 AUD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비거주자가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쉽 등에도 확대를 추진 중임.
- 또한, 다국적 기업이 호주 내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얻었으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국외로 이전한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우회 수익세(Diverted Profits Tax: DPT)를 도입하여 201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관련 세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25천 AUD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아울러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 내에 2016년부터 조세회피방지T/F(Tax avoidance taskforce)를 운영 중임.
 - 2017년~2018년 기준 63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함.

□ 진출(예정 포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 한·호주간 경제교류 확대에 따라 호주에 진출 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호주의 최신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
 - ※ 이번 안내책자는 2014년 출간된「호주진출기업 세무안내 2014」내용을 기본으로, 이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음.

안내책자 제작에 도움을 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EY 회계법인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책자의 구성과 범위



- 동 책자는 총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1장에는 개관 및 호주의 현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기술하였음.
- 제2장에는 호주의 국제조세 제도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 먼저, 이전가격세제에 대해 관련 규정, 제도의 특징,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기술한 후 최근 내려진 중요 판례도 수록하였음.
 - 그리고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 APA)와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 MAP)에 대하여 관련 규정, 세부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음.
 - 또한, 조세조약(Tax Treaty) 및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TIEA)의 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였음.
 - 아울러,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 위해 최근에 도입된 다국적 조세회피 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MAAL)와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 DPT) 그리고 호주 국세청이 운영 중인 조세회피방지 T/F (Tax avoidance taskforce) 대하여 기술하였음.
-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호주의 주요 세목별로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 하여 핵심 위주로 정리하였고, 더불어 사후검증제도 및 불복제도에 대하여도 기술하였음.
- 제9장에서는 한·호주 FTA의 주요 내용, 호주의 투자환경 및 투자유인 정책 그리고 호주의 기업형태 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였음.
- 부록에는 호주 진출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주요기관 웹사이트 주소, 한국기업 진출현황, 한・호주 조세조약 전문을 수록하였음.
- (부록 1) 무역투자 관련 호주 주요 유관기관 웹사이트
- (부록 2) 호주의 한국기업 진출현황
- (부록 3) 한·호주 조세조약 전문



3 호주 국가현황 및 역사 ▼



□ 호주 국가 개요

- 호주는 오세아니아 대륙 전부를 국토로 하는 나라로서 국토 면적이 남한 면적의 약 80배에 이르고, 나라의 공식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호주연방), 흔히 줄여서 Australia로 지칭됨.
 - 국명의 어원은 라틴어 Terra Australis 즉 남쪽의 나라(land of south)에서 유래됨. 라틴어 Australis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음차로 호태리아주 (濠太利亞洲) 또는 호랄리주(濠剌利洲)로 표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호주라 부르고 있음.

□ 호주 지도

- 호주는 총 6개의 주와 2개의 테리토리(특별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음.
 - 서호주(Western Australia), 퀸슬랜드(Qeensland),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남호주(South Australia), 태즈매니아 (Tasmania),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 (Australia Capital Territory)로 구성되어 있음.





□ 호주 지리

-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태즈메니아 섬,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음. 길이로는 남북이 3700km, 동서가 4000km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임.
 - 북쪽에는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 북동쪽에는 솔로몬 제도와 바누아투, 뉴 칼레도니아 그리고 남동쪽에는 뉴질랜드가 있고 총 면적 769만 평방 km의 호주 본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대륙임.
 - 호주는 또한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진 유일한 대륙이기도 하며, 대양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섬' 대륙이라고 불리기도 함.
 - 거주지는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가 잘 이루어진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80%의 국민들이 해안선의 100km 반경에 거주하고 있음.

(출처 : 호주관광청(http : //www.australia.com))

□ 한 · 호주관계

| 1965 | 무역협정 |
|------|--------------------------------|
| 1975 | 무역 및 경제발전 협정 |
| 1982 | 이중과세 방지협정(1984.01.01. 발효) |
| 1983 | 시장개방에 관한 각서 교환(1983.11.24. 발효) |
| 1983 | 어업협정(1983.11.24. 발효) |
| 1988 | 세관지원 양해각서 |
| 1988 |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교환 |
| 1992 | 항공협정(1992.09.07. 발효) |
| 1992 | 형사사법공조 조약(1992.12.19. 발효) |
| 1992 |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 교환(1992.09.30. 발효) |
| 1993 | 경제공동위 설립 약정 |
| 1995 | 표준 및 인증 기술협력 약정 체결 |
| 1996 | 한·호주 환경협력각서 교환 |
| 1996 | 산업 및 기술협력 약정 |



| 1999 | 민사사법공조조약, 과학기술협력협정, 자원협력 양해각서 체결 |
|------|----------------------------------|
| 2005 | 에너지·자원협력 협정 |
| 2006 | 한·호주 FTA 타당성 조사 개시 발표 |
| 2008 | 한·호주 FTA 타당성 조사 완료 |
| 2009 | 국제 이산화탄소포집저장연구소(GCCSI) 설립 참가 MOU |
| 2009 | 양국 정상 회담 개최 및 FTA 협상 개시 |
| 2011 | 한・호주 기후변화・녹색성장 고위급 대화 |
| 2012 |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GGI) 설립 협정 참가 |
| 2012 |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 |
| 2013 | 한·호주 역외탈세정보 공유 협정 체결 |
| 2013 | 한·호주 FTA 협상 타결 발표 |
| 2014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출처: KOTRA 시드니 무역관 국가정보)

□ 호주 인구

- 50,000년 전부터 원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1606년 호주 서부에 네덜란드가 진출하면서부터 유럽과의 접촉이 시작됨. 1770년 영국이 동쪽지역에 진출하고 이후 1788년 1월 26일부터 뉴 사우스 웨일스 주로 죄인들을 수송해 정착시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음.
 - 2018.12월 기준(호주통계청(http://www.abs.gov.au))으로 2,517만명임.

□ 도표로 보는 호주

| 국 명 |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 | |
|-----|---|--|--|
| 위 치 | 오세아니아(동경 113°9'~153°39', 남위 10°41'~43°39')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 | |
| 면 적 | 768만km'(한반도의 약 35배, 알라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와 비슷, 유럽대륙의 0.8배) | | |



| 기 후 |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남극을 제외하면 가장 건조한 대륙 | | |
|------------|---|--|--|
| 수 도 | 캔버라 | | |
| 민 족 |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 | |
| 언 어 |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개 방언) | | |
| 정부 형태 |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 | |
| 국가 원수 |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 총독, 주 정부는 주총독이 영국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 | | |
| 호주의 보석 | 오팔(1993.07.28.에 호주를 대표하는 보석으로 발표) | | |
| 사법체계 | 영국식 사법체계를 따르나, 영국과 달리 성문헌법 채택 | | |
| 1인당 명목 GDP | 51,054달러 | | |
| 실질 경제성장률 | 2.4%(2018년) | | |
| 실 업 률 | 5.9%(2018년) | | |
| 주요 교역국 | 수출: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홍콩, 미국 수입: 중국, 미국, 일본, 한국, 태국, 독일 등 | | |
| 교역 품목 | 수출: 광물성 연료, 광물, 귀금속류, 육류, 곡류 등 수입: 자동차, 핵반응 기계,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등 | | |
| 회계연도 | 7월 1일 ~ 6월 30일 (2018년 회계연도 : 2017.07.01. ~ 2018.06.30.) | | |
| 교 민 | 약 18만명 | | |

(출처: KOTRA 시드니 무역관 호주 국가정보, 2018 호주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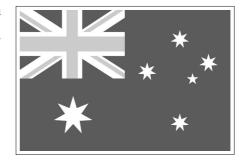
4 호주 정치 현황 7



- 호주에는 호주 연방정부, 6개의 주(州)정부와 2개의 territory를 관할하는 주정부, 700개의 지방정부, 3단계로 정부가 구성됨.
- 호주 의회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의회와 마찬가 지로 호주 연방 의회 역시 상·하원으로 구성되고 주의회, 지방의회가 구성됨.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150명으로 구성되며, ACT 2명, NSW 48명, NT 2명, QLD 30명, SA 11명, TAS 5명, VIC 37명, WA 15명으로 배분됨.(2014년 기준)
 - 상원(senator)은 6개주에서 12명씩 선출되고 2개의 Territory에서는 2명씩 선출되어 총 76명으로 구성됨.
 - 호주의 선거는 의무투표제를 채택하여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2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출처 : 호주 연방국회(http://www.aph.gov.au))

○ 호주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Queen Elizabeth II)이 국가 원수로 되어 있는 입헌군주제로써 호주의 국기에는 연방의 별(The Commonwealth Star), 남십자성 (The Southern Cross) 그리고 영국 국기 유니언잭(Union Jack)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



○ 영국 여왕은 호주 국민이 선출한 호주 정부의 조언을 받아 여왕을 대신 하여 호주를 대표할 총독을 임명하고, 총독은 호주총리의 조언을 받아 장관을 임명함.



- 호주의 정부 시스템은 종교적 관용 및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음.
- 호주 헌법은 대외 관계, 통상, 방위, 이민 관리 등 호주 정부의 기능을 규정 하고 있고 주와 테리토리는 연방 정부의 관할 이외의 업무를 담당함.
- 주와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에는 노동당과 자유-국민 연립당의 2개 당이 있고, 단일이건 연립이건 호주 국민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를 차지한 당이 여당이고 단일이건 연립이건 소수당은 야당이 됨.

5 호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7



□ 개요

- 한국과 호주는 6.25 참전(17,164명 파병, 339명 사망)과 1961년 10월 수교 이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범세계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한 실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1967년 호주 Holt 총리의 방한을 시작으로 1968년 박정희 대통령 호주 방문 등 국가원수 간의 상호 방문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FTA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음.

□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협력의제

- 주요 수출입 품목(2017년 1월~7월 통계기준)
 - (수출) 대 호주 해양플랜트 수출(FLNG)로 인한 수출액 대폭 증가, 경유 및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 수출 증가, 수송기계 및 관련 제품 수출은 감소세



- (수입) 광물자원가격 회복으로 관련 제품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 유연탄 및 철광, 천연가스 수입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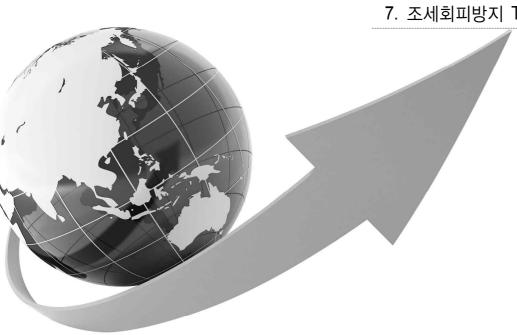
○ 호주 투자진출 현황

- 재료 수입 후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호주는 미래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투자처로 꼽힐 가능성이 높음.
-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호주의 정책 중 하나는 자본조달로서,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해 오고 있음.
- 이에 외화 규제도 거의 없는 편으로 투자 유치에 유리함.

(출처: KOTRA 시드니 무역관 호주 국가정보, 2018 호주 진출전략)

국제조세

- 1. 이전가격세제 / 14
- 2.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 / 20
 - 3. 상호합의 절차 / 25
 - 4. 조세조약 / 28
- 5. 다국적 조세회피 방지법 / 30
 - 6. 우회수익세 / 32
 - 7. 조세회피방지 T/F 운영 / 33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Taxation) 🔻



□ 이전가격세제 개요

- 호주의 이전가격세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 내에 있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여 국외로 소득을 이전(Profit Shifting)하는 경우 호주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정상가격이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함.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을 정상가격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 하며, 이 원칙은 이전가격세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

□ 호주의 정상가격 산출방법(Taxation Ruling(TR) 97/20 Chapter 3)

- 전통적인 거래 방법(Traditional methods)
 - (a)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 (b) 재판매 가격방법(The resale price method : RP)
 - (c) 원가가산방법(The cost plus method : CP)
- 이익 기준 방법(The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 (a) 이익분할방법(The profit split methods)
 - (b) 거래 순이익률 방법(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s)
- 위 방법들은 별도의 적용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면 됨.

□ 이전가격세제 관련 규정 및 적용

○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률 등 관련 규정

- 소득세법 1936 제3장 제13절(Division 13 of Part III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ITAA) 1936)
- 소득세법 1997 제815-A, B, C, D, E조(Subdivisions 815-A, B, C, D and E of the ITAA 1997)
- 국세행정법 1953 제284-E조(Subdivision 284-E of the Taxation Administration Act(TAA) 1953)
- 기타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

○ 적용범위

- 소득세법 1936 제13절은 1982년에 제정되었고,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기간에 적용됨.
- 소득세법 1997 제815-A조는 2012년에 제정되었고, 2004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소득에 적용됨.
- 소득세법 1997 제815-B, C, D조는 2013년에 제정되었고, 201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됨.

○ 관련 규정의 특징

- 정상가격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음.
-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13년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률 개정

○ 개정배경

- 호주 국세청(ATO)은 2011년 6월 SNF (Australia) Pty Ltd를 상대로 한 이전가격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를 계기로,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과정에 확인된 법률상 미비점을 중심으로 2013년 6월 소득세법(ITAA)의 이전가격 관련 조항을 개정함.



☐ ATO VS SNF (Australia) Pty Ltd (2011년 6월 1일 판결)

○ 쟁점

- SNF (Australia) Pty Ltd(이하 "납세자")가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했는지 여부와 ATO에서 법인세 과세목적으로 거래 순이익률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납세자는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의 호주법인으로, 화학제품을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호주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은 SNF 프랑스에 있음.
- 납세자는 1990년~2004년 계속하여 결손으로 법인세 신고함.
- ATO는 1997~2003 과세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시 과다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호주 국세청이 산정한 정상매입비용에 의한 평균영업이익율 (1.7%)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납세자는 제3자가 납세자보다 더 비싼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 하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에 의한 정당한 신고임을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납세자가 주장에 대해 재화를 거래하는 국제적인 거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ATO가 주장하는 비교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CUP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 반면, ATO가 주장하는 거래 순이익률 방법(TNMM)에 의한 소득계산은 납세자가 결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TNMM은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일반적인 OECD 가이드라인은 조세조약의 합법적 보조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 또는 호주가 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함.

○ 국세청 대응

- 판결 이후 유일하게 이전가격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률 Division 13, ITAA 1936으로는 변화하고 있는 이전가격 관련 사항에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법률 개정작업에 들어감.

○ 2013년 개정 사항의 특징

- 단순 거래가격이 아닌 이익배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가격 산출
- 납세자에게 자체검증 의무 부여
- ATO에 이전가격 조사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 부여
- 엄격해진 이전가격 증거서류 제출 및 가산세 적용
- OECD 가이드 라인에 바탕을 둔 이전가격 법률
- 이전가격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제한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거래의 재구성(Reconstruction)

- ITAA 1997 Subdivisions 815-115~130에서는 과세당국(ATO)에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거래의 재구성 권한을 부여함.
- 재구성의 권한은 단순히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상업적·재무적 조건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전반적인 조건을 정상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정상조건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발생하는 가격, 매출이익, 순이익, 이익의 분배를 포함함.
 - 이는 SNF (Australia) Pty Ltd 사례에서 보듯 이전 법률은 적자기업에 대해서도 시장가격 반영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했지만, 개정 법률은 이익 분배에 관한 부분도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대처 가능하게 됨.
- 거래의 재구성 시 단순히 과세소득금액뿐만 아니라, 결손금액, 세액공제 금액, 이자 또는 로열티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금액까지 재계산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특수한 상황에서만 과세관청이 재구성의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음.



□ 이전가격 적정 검토 및 조사

- ATO는 이전가격 적정 여부 검토를 신고검토의 일종으로 봄.
 - 국외특수관계인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적용하였다는 내부검토서 등 거래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음.
- ATO는 이전가격의 적정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 이전가격 주요 검토 사항
 - ① 관계기업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상업적인 실제 요소와 범위
 - ②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한 내부검토의 적정여부
 - ③ 국제거래에 관한 증빙서류의 충실성
- ATO는 세무조사 전 당해 납세자의 이전가격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 자발적 수정신고의 기회를 줌.
-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 절차와 유사함.

□ 이전가격 관련 최근 주요 판례

- ☐ ATO VS Chevron Australia Holdings Ltd (2017년 4월 21일 판결)
- 쟁점
 - 9%의 이자율이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Chevron-US(C-US, 미국), Chevron-AU(CAH, 호주), Chevron Fundion Corporation(CFC, 미국, CAH의 자회사)
 - CFC는 C-US의 보증을 받아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2.5억USD를 조달하였는데, 이 기업어음의 이자율은 1.2%임.
 - CFC는 조달한 자금을 CAH에 9%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함.
 - CAH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C-US로부터 보증을 받지도 않았음.
 - 호주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음.

○ CAH의 주장

- CAH가 무보증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9%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CFC가 CAH에 받기로 한 9%의 이자는 정상가격 워칙에 부합함.

○ ATO의 주장

- Chevron그룹은 계열사에 항상 보증을 제공하므로 무보증 상황을 가정하여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Chevron그룹이 보증하는 상황에서 조달된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대여할 때의 이자율을 근거로 정상가격원칙 부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연방법원의 판단(핵심 요약)

- Chevron그룹의 계열사 들은 그동안 모회사의 보증을 받아 최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으므로 CAH가 직접 자금을 조달받았더라도 모회사의 보증을 받으면 CFC에 주기로 한 9%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하였을 것임. 따라서 CAH와 CFC 간의 거래는 정상가격원칙에 위배됨.

○ CAH의 대응

- CAH는 2017년 8월 18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

○ 판결의 의의

- 호주 법원은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대출(lelated-party loans) 거래에 대한 적절한 이자율에 대한 통제권이 ATO에 있다고 판단함.
- ATO는 동 판례를 근거로 향후 10년간 유사한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하여 100억 AUD의 세입을 예상함.



2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 : APA)



□ APA의 개요

- APA는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납세자와 과세 당국 또는 과세당국 간 상호협상을 통해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함.
 - APA은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정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호주의 APA 관련 실무규정

- 호주의 APA는 ITTA 1997 제815-120조(When an entity gets a transfer pricing benefit)을 근거로 함
- ATO는 2015년 APA의 실무지침서인 Practice Statement Law Administration (PS LA) 2011/1을 PS LA 2015/4로 개정함.
- PS LA 2015/4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포괄적인 원칙만 정하는 원칙 중심 방식(principle-based approach)
 -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간소화된 프로세스 및 관례의 개선(streamlined process and practices to improve timelines)
 - 문서주의의 축소(reduction in red tape)

□ APA의 종류

- APA는 일방APA(Uilateral APA), 쌍방APA(Bilateral APA) 그리고 다자간 APA(Multilateral APA)로 나눌 수 있음.
 - 일방APA는 납세자와 ATO간 협의를 통해 체결함.

- 쌍방APA는 거래상대방의 과세당국과 ATO간 협의를 통해 체결함.
- 다자간APA는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의 과세당국과 ATO간 협의를 통해 체결함.

□ APA 적용기간

○ 승인된 APA의 적용기간은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임.

□ APA의 절차

- APA절차는 크게 사전신청단계(Early Engagement Stage), 정식신청 및 검토 단계(APA Application Stage), 준수여부 모니터링 단계(Monitoring Compliance Stage)로 구분됨.
 - 사전신청단계는 다시 ① APA 사전신청(APA Request), ② APA 진행가능 여부 식별(Triage), ③ 예비 협의(Preliminary discussions), ④ 사전신청서 검토결과 논의(APA request review workshop), ⑤ 정식신청 승인(invite lodgement) 단계로 구분됨.
 - 정식신청 및 검토단계는 ① 정식 신청서 접수(Formal APA Application), ② 신청내용 분석 및 평가(analyse/Evaluate application), ③ ATO의 초기 입장 정리(Initial ATO Position), ④ 신청서와 ATO 초기입장에 대한 질의 응답(QA Workshop), ⑤ 상호토론과 협의(Negotiation), ⑥ 당국의 승인을 위한 합의된 초안 작성(Agreed draft for CA endorsement), ⑦ 서명(APA signing) 단계로 다시 구분됨.
 - 준수여부 모니터링 단계는 연례보고서 작성(Annual Compliance Report: ACR) 단계임.
- 각 단계는 반드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 등이 미흡한 경우 1개 또는 수개의 단계가 지속·반복될 수 있음.
- 1단계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2단계는 최대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



○ 납세자가 APA를 (사전)신청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Internationals Gatekeeper에게 e메일(internationalsgatekeeper@ato.gov.au)을 보내거나, Australian Taxation Office GPO Box 9977, Brisbane QLD 4001에 서면을 보내면 됨.

□ APA 절차 개시 및 승인의 기본요건

- 납세자가 제출 (사전)신청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ATO에서 APA 협의를 개시 및 승인할 가능성이 높음.
 -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2010년 7월 22일 발표한 OECD 가이드라인에 적합함.
 - APA의 대상이 되는 거래 조건 등이 이미 확립되어 있고 APA 기간 동안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임.
 - APA 신청이 심사숙고한 결과이며, 그 결정이 APA 기간에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임.
 - 이전가격 관련 사항이 복잡하고,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불확실성이 있음.
 - APA가 없으면 이중과세 확률이 높음.
- 반면, 신청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ATO에서 APA 협의를 개시 및 승인 할 가능성이 낮음.
 - 거래 조건이 단순하거나 일상적이어서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비교적 명확함.
 - 국제거래가 많지 않거나 APA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비교적 적음.
 - 호주 내 실제 경제활동과 수익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적음.
 - ATO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대상 거래에 상업성이 부족함.
- ATO의 APA책임자는 상기 내용 이외에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식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함. 단, 열거된 사항 이외에도 다른 사항도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려짐.

- 사전신청에서 제공된 정보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여부
-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지 여부
-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가 행정력을 들일만큼 중요한지 여부
- 이번 APA가 위험방지 정도, 납세자의 준수 이력 및 이전 APA에서의 성과를 고려할 때 적합한지 여부
- 국제거래로 인해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이익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식으로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그 방식이 ITAA 제815-135조에 적합한지 여부
- APA가 없는 경우, 이중과세 또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당사자들이 적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부수적인 문제가 APA 승인이나 승인과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 승인된 APA의 소급적용 문제

- APA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식은 이전 과세기간에도 소급적용(roll-back)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급적용 기간은 2년 이내임.
 - 모든 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대해 소득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그 연도에 납세자의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짐.

□ APA의 갱신

○ APA 갱신은 원칙적으로 최초 승인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함.



- 다만, 거래내용 및 호주 내 기업의 역할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기존 APA의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으며, 신규 APA(갱신되는 APA) 기간 동안 거래에 중요한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경우 갱신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될 수 있음.

□ APA의 수정 또는 철회

○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한 APA에서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ATO에는 관련 APA를 수정 또는 철회를 검토함.

□ 결정의 재검토 요청

- APA책임자 또는 관리부서(Program Management Unit: PMU)에서 한 APA 요청의 거절, APA 범위에 대한 합의실패, APA 철회, APA절차의 정지 등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ATO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이의를 신청하면 당초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가 검토하며, 재검토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APA프로그램 최고책임자에게 다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APA와 세무조사(Audit)와의 관계

- APA 승인은 해당 납세자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분석 및 세무조사를 면제하지는 않음.
 - 다만, ATO는 납세자가 중요한 정보를 누락·오류 제출하지 않는 한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연례보고서 검증을 제외하고 APA 대상이되는 국제거래에 관하여 세무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음.

□ 준수여부 모니터링

- 납세자는 APA가 적용되는 각 연도마다 APA의 조건에 따라 공무원이 서명한 ACR을 만들어야 함.
 - ACR은 해당 연도의 실제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APA 조건의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수록하여야 함.
- 양자 또는 다자간APA의 ACR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가정 또는 조건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ATO는 관련 관련 과세당국에 이를 통보하고,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방법을 논의하게 됨.
- 일방APA의 ACR에 하나 이상의 중요한 가정 또는 조건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ACR 검토자는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해명을 들은 후, 위반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APA를 개정, 수정,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상호합의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 MAP)



□ MAP의 개요

- 국제거래는 둘 이상의 국가를 거쳐는 특성상 과세권의 중복으로 인한 이 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정국가의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로 인한 이전가격 과세표준 변동이 다른 국가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세권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신청하고,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 신청 받은 과세당국은 관련 국가의 과세 당국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합의 절차에 들어가게 됨.



□ MAP 관련 규정

- 한·호주 조세조약 제25조【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호주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이중과세 문제 등 발생 시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을 요청(제소)할 수 있음.
 - 미국, 캐나다, 일본과는 조세행정 관련 태평양 국가 협의체(Pacific Association of Tax Administrators: PATA)를 구성하여 회원국 사이에는 별도의 상호 합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호주 당국은 2018년 11월 21일 MAP업무의 실무 가이드라인인 TR 2000/16를 폐기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AP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과세 당국의 통지 또는 조치 등 개연성(probable)이 있어야 함.
 - 납세자는 당사국 어느 나라에서든 MAP을 신청할 수 있음.
 - 통상 과세당국의 조치가 있은 후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OECD 권고와 같이 2년 이내에 합의할 것임.
 - 다국적 조세회피 방지법 및 우회수익세도 MAP를 신청할 수 있음.
 - 호주 소득세법의 일반적인 회피 금지 조항인 Part IVA는 조세조약에 우선하므로 Part IV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MAP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경우에 따라 2개 이상의 과세당국이 관여하는 다자간 협상도 가능함.

□ 상호합의 절차

- 상호합의 절차는 크게 2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납세자와 ATO 간에 이루어지며, 2단계는 ATO와 관련국 과세당국 간에 이루어짐.
 - 1단계는 다시 ① 납세자의 요청, ② 요청 사항 검토, ③ 요청 정당시 호주 당국이 일방적 구제방안 제공 가능 여부 결정 단계로 구분됨.

- 2단계는 1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진행하며, 서면 또는 직접 회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모색함.

□ 상호합의 신청기한

○ 과세상의 결과가 되는 조치에 관한 첫 번째 통지로부터 3년 이내에 제소 (신청)하여야 함(한・호주 조세조약 제25조 규정 참조)

<호주의 조세조약 상 주요국가의 상호합의 신청기한>

| 주요 국가 | 신청기한 |
|------------------------------|-------|
|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 규정 없음 |
|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 2년 |
|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 3년 |
| 대만, 아르헨티나 | 4년 |

○ 상호합의와 관련된 세금은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한 경우 통상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수익에 위험이 있거나, 만기일 이후 미지급된 부채가 있거나, 미이행된 다른 세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없음.

□ 과세 불복과의 관계

- 호주는 MAP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호주 국내법이 제공하는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호주 국내법에 의해 구제를 받고 싶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MAP 신청기한이 경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MAP신청 보호(Protective MAP request)를 요구할 수 있음.



- 불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당국 간 합의가 완료되면,
 - 당국 간 합의에 의해 관련 세금을 원상복귀하고 납세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납세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취하하면 됨.
 - 당국 간 합의에 의해 관련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지되고, 납세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납세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취하하면 됨.
 - 당국 간 합의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계속 불복을 진행하면 됨. 이 경우가 당국간 합의된 내용은 이행되지 않고 MAP는 마무리됨.
- 과세당국 간 합의 전 불복이 완료되면,
 - 불복에 의해 관련 조세가 없어지면 MAP는 마무리되며, 불복에 의해서도 관련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으면 MAP는 계속 진행됨.
 - 불복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고 그때까지 당국간 합의가 없다면, 납세자는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AAT)나 연방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AAT나 연방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호주 과세당국은 이에 따를 것이며, 호주 당국은 결정 내용에 따라 합의 상대국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것임.

4 조세조약 (Tax Treaty) 🕶



□ 호주의 조세조약 개요

○ 호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해 조세 조약(조세협약: Tax Conventions,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greements(DTA))를 체결함 ○ 호주는 2018년 12월 현재 45개(Income Tax Treaties 기준) 국가와 조세 조약을 맺고 있음.

□ 조세조약에 관한 호주 국내 규정

○ 호주 조세조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Act 1953과 Taxation Ruling(TR) 2001/13에서 다루고 있으며, 특정상황에서는 다른 세법에 의해 적용될 수 있음.

□ 한·호주 조세조약 개요

- 한·호주 조세조약은 1982년 7월 12일 호주 캔버라에서 서명되었으며, 1984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었음.
 - 조세조약 상 이자, 배당,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주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주요국가 이중과세 방지 협정상 원천징수 세율>

| 국 가 명 | 원천징수 세율 | | | 발효일 |
|----------|---------|------|-----|-------------|
| 국 가 당 | 배당 | 이자 | 로열티 | 글쪼글 |
| 한 국 | 15 | 15 | 15 | 1984.01.01. |
| 일 본 | 0/5/10 | 0/10 | 5 | 2008.12.03. |
| 중 국 | 15 | 10 | 10 | 1990.12.28. |
| 독 일 | 0/5/15 | 0/10 | 5 | 2016.12.07. |
| - 영 국 | 0/5/15 | 0/10 | 5 | 2003.12.17. |
| 미국 | 0/5/15 | 0/10 | 5 | 2003.05.13. |
| 뉴질랜드 | 0/5/15 | 0/10 | 5 | 2010.03.19. |

□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 TIEA)

○ 호주는 국제적인 조세회피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여러 나라와 TIEA를 체결 하고 이들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 주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 제도 등 36개 국가화 체결함.
- 다만, 과테말라의 경우 2013년 9월 26일 서명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발효는 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호주는 세계 115개국이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을 2012.12.01. 발효하여, 많은 국가와 조세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5

다국적 조세회피 방지법

(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MAAL)



■ MAAL의 개요

-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MAAL을 제정하여 2015년 12월 11일부터 발효함.
 -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 MAAL법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적용됨.
 - 외국기업이 호주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
 -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호주에서 수행된 활동이 외국기업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종속된 호주기업에 의해 수행됨.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행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기업의 호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음.
 - 해당 외국기업은 연간 전세계 수입 10억AUD 이상인 주요 글로벌 기업 (Significant Global Eentity: SGE)의 모기업 또는 그 관계사임.

○ MAAL이 적용될 경우 호주에서의 세제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기업의 수익을 호주의 가상 고정사업에 귀속시켜 과세하는 방법 등을 의미함.

□ 시행 실적

- 2017년 6월 현재 31개 다국적 기업이 수익 계산구조를 수정하였거나 수정하고 있음. 이중 18개 기업은 64억 AUD 이상의 매출을 호주에 신고함.
- 아울러 2017년 5월에 호주 재무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 ATO에서는 MAAL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7개(전자상거래 기업 7개, 에너지 기업 3개)에 대해 29억 AUD를 추징함.

□ 적용대상 등 강화 움직임

- 호주 정부는 MAAL의 적용 범위를 모든 비거주자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쉽, 비거주자 수탁자가 있는 신탁, 그리고 일시적으로 호주 내에서 경영 (관리)하는 외국 신탁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2017년~2018년 예산안에 포함하여 발표함.
 -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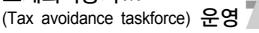
6 우회수익세 (Diverted Profits Tax : DPT) 🔻



- 호주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호주 내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DPT를 도입함.
 - DPT는 2017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획(scheme)에도 적용됨.
- DPT는 호주 내에서 거래를 수행하여 소득을 창출하지만 경제적 실질 없는 형식적인 거래를 통해 호주 내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하는 것으로 세율은 40%(일반 법인세율 30%)임.
- DPT는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적용됨.
 - 해당 외국기업은 연간 전세계 수입 10억AUD 이상인 주요 글로벌 기업 (Significant Global Eentity: SGE)의 모기업 또는 그 관계사임.
 - 호주 내에서 연간 수입이 25백만 AUD 이상임.
- 관리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 다수투자자가 조성한 외국투자회사, (Foreign Collection Investment Vehicle with Wide Membership), 외국정부기업(Foreign Entity owned by a Foreign Government), 퇴직연금 (Complying Superannuation Entity), 외국연금펀드(foreign pension fund)는 적용대상에 제외됨.
- 한편, 호주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DPT 등 조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세금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최대 100배 인상하기로 함.
 - 세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국적 기업은 가산금이 최대 525천 AUD로 증가할 것임.
- 호주정부는 2018~2019 과세연도에 DPT로 약 1억 AUD의 세입을 예상함.

7 조세회피방지T/F





- ATO는 대기업이나 대자산가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조세회피방지T/F를 운영 중임.
- 세금회피 여부 확인을 통한 과세권 보호,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세금회피 위험 관리, 업종별 특성 파악과 그를 활용한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7년~2018년 주요 업무실적은 다음과 같음.
 - 63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 44명에게 다국적 조세회피 방지법(MAAL)을 적용하여 약 70억 AUD 추징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한 우회수익세(DPT) 부과대상 확인

개인소득세

 \blacksquare

- 1. 납세의무자 / 36
- 2. 세율 및 과세표준 / 38
- 3.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 42
 - 4. 신고 및 납부 / 44
- 5. 의료부담금(Medicare Levy) / 46
- 6.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46





1 납세의무자



□ 세법상 거주자의 의미

-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사전적인 의미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따라 단순히 결정되는 의미가 아니며, 당해 국가의 과세권 내에 포함되는 개인(법인) 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호주에 진출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른 과세요건을 적용받게 되므로 거주자 개념에 대한 이해 필수

○ 거주자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점들

- (세율)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거주자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국외소득)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는 거주자일 경우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비거주자는 호주 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 (의료보험) 거주자는 전체소득의 2%를 의료보험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비거주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세액공제) 거주자는 과세소득이 \$37,000이하인 경우 최대 \$445의 저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

□ 세법상 거주자 요건

○ 호주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① 거주여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② 주소 테스트, ③ 183일 테스트, ④ 연금제도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자 여부 결정

① 거주여부 테스트(Resides test)

- 세법상 거주자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테스트로서,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호주 입국 목적과 비자의 종류, 호주에서의 가족관계 형성여부, 사업 및 직장의 연속성, 주요자산의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호주 세법은 거주자 요건을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호주 국세청에서는 TR 98-17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를 판단 * 거주여부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②~④의 테스트는 필요 없음.

② 주소 테스트(Domicile test)

- 호주 세법상 domicile의 의미는 permanent place of abode로서, 항구적인 거주지가 호주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며, 이 테스트는 호주의 거주자 였으나 호주를 떠나 국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적용
- 법적으로 인정된 납세자의 항구적 거주지가 호주 내에 위치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근거지가 호주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permanent place of abode로 인정한다고 명시
- 항구적이라는 단어는 영원하다는 의미가 아닌 일시적·가변적이라는 의미의 반대용어로 해석된다고 명시

③ 183일 테스트(The 183 day test)

- 납세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절반인 183일 이상을 호주에 거주할 경우 거주자로 판정(반드시 연속하여 183일을 거주할 필요는 없음.)
- 다만 항구적인 거주지가 호주 밖에 소재하거나, 호주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 183일-rule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간주
 - * 183 day test는 항구적인 거주(permanent place of abode)가 아닌 일상적인 거주(usual place of abode)가 호주 내에 소재할 것을 명시

④ 연금제도 테스트(Superannuation test)

- 호주의 공공부분 퇴직연금 가입자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앞선 테스트와 무관하게 거주자로 간주
- 납세자 본인이 연금제도 테스트에 의해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와 16세 이하의 자녀는 동일하게 거주자로 간주됨.



2 세율 및 과세표준



□ 과세구간 및 세율

- 과세구간과 세율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유한 근로자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 구분
 - ① 거주자 적용 세율(2018~2019 과세연도)

| 과세표준(Taxable income) | 세율(Tax on this income) |
|----------------------|---------------------------------------|
| 0 ~ \$18,200 | 과세하지 않음(nil) |
| \$18,201 ~ \$37,000 | \$18,200를 초과하는 소득 × 19% |
| \$37,001 ~ \$90,000 | \$3,572 + (\$37,000를 초과하는 소득) × 32.5% |
| \$90,001 ~ \$180,000 | \$20,797 + (\$90,000를 초과하는 소득) × 37% |
| \$180,001 and over | \$54,097 + (\$180,000를 초과하는 소득) × 45% |

② 거주자 적용 세율(2017~2018 과세연도)

| 과세표준(Taxable income) | 세율(Tax on this income) |
|----------------------|---------------------------------------|
| 0~\$18,200 | 과세하지 않음(nil) |
| \$18,201 ~ \$37,000 | \$18,200를 초과하는 소득 × 19% |
| \$37,001 ~ \$90,000 | \$3,572 + (\$37,000를 초과하는 소득) × 32.5% |
| \$87,001 ~ \$180,000 | \$19,822 + (\$87,000를 초과하는 소득) × 37% |
| \$180,001 and over | \$54,232 + (\$180,000를 초과하는 소득) × 45% |

- '12~'13 과세연도부터 과세 면제 기준이 \$6,000에서 \$18,200으로 대폭 인상
- 상기 세율에는 의료보험 부담금(Medicare levy) 2%가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는 의료보험 부담금도 일부 감면 (면제)
- 초고소득자(1인 기준 연소득 \$90,001 이상)인 경우 의료보험 부담금 외 의료보험 추가부담금(Medicare levy surcharge)까지 납부

③ 비거주자 적용 세율(2018~2019 과세연도)

| 과세표준(Taxable income) | 세율(Tax on this income) | |
|----------------------|---------------------------------------|--|
| 0 ~ \$90,000 | 32.5% | |
| \$90,001 ~ \$180,000 | \$29,250 + (\$90,000를 초과하는 소득) × 37% | |
| \$180,001 and over | \$62,550 + (\$180,000를 초과하는 소득) × 45% | |

④ 비거주자 적용 세율(2017~2018 과세연도)

| 과세표준(Taxable income) | 세율(Tax on this income) |
|----------------------|---------------------------------------|
| 0 ~ \$87,000 | 32.5% |
| \$87,001 ~ \$180,000 | \$28,275 + (\$87,000를 초과하는 소득) × 37% |
| \$180,001 and over | \$62,685 + (\$180,000를 초과하는 소득) × 45% |

-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높으나, 의료보험 부담금(과세표준의 2%)은 납부의무 면제

⑤ 워킹홀리데이 소득자 적용 세율(2018~2019 과세연도)

| 과세표준(Taxable income) | 세율(Tax on this income) |
|---|---------------------------------------|
| 0 ~ \$37,000 | 15% |
| \$37,001 ~ \$90,000 | \$5,550 + (\$37,000를 초과하는 소득) × 32.5% |
| \$90,001~\$180,000 \$22,775 + (\$90,000를 초과하는 소득) × | |
| \$180,001 and over | \$56,075 + (\$180,000를 초과하는 소득) × 45% |

⑥ 워킹홀리데이 소득자 적용 세율(2017~2018 과세연도)

| 과세표준(Taxable income) | 세율(Tax on this income) |
|----------------------|---------------------------------------|
| 0 ~ \$37,000 | 15% |
| \$37,001 ~ \$87,000 | \$5,550 + (\$37,000를 초과하는 소득) × 32.5% |
| \$87,001 ~ \$180,000 | \$21,800 + (\$87,000를 초과하는 소득) × 37% |
| \$180,001 and over | \$56,210 + (\$180,000를 초과하는 소득) × 45% |

- 워킹홀리데이 소득자는 면세구간이 없으며, 납세자가 소유한 비자가 417(Working Holiday) 또는 462(Work and Holiday)인 경우 위 세율 적용
-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장기비자로 전환하여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445 환급 가능



⑦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 호주에서는 성인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일부 소득에 고율의 세금 부과
- 예외적으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상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취득하거나,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주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
- 또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이중 고아 연금을 수령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적용

□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

- 과세가능소득은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에서 비과세소득(Exempt Income)과 과세제외소득(Non-Assessable Income)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
 - 경상소득은 급여나 사업소득 등 계속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반면, 법정소득은 부동산의 양도 등에서 발생한 일시적 소득을 의미
 - 비과세소득은 국가로부터 수령한 일정한 보조금, 연금, 장학금 등이며, 과세제외소득은 일정한 퇴직소득, 기부금 등을 의미

○ 주요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

- 급여 및 상여금 등(Employment income)
- 연금 및 사회보장관련 수당(Pensions, Annuities and Government payments)
-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
- 부동산등의 양도소득(Capital gain)
- 사업 동업, 신탁 소득(Business, Partnership, Trust income)

□ 과세소득(Taxable Income)

○ 과세소득은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필요경비(Allowance Deduction)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

- 과세가능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지칭
 - * 호주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 2014년 버전에서는 Deduction을 "공제"로 표기하였으나 본 책자에서는 "필요경비"로 표기

□ 필요경비(Deduction)

- 개인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Income Tax Assessment Act(ITAA) 1997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 필요경비와 특별 필요경비로 구분
 - 일반 필요경비는 사업상 경비와 고용에 관한 경비이며, 특별 필요경비는 인적공제 및 기부금 등을 포함.
-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이 호주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함.
 - 1) 납세자 본인 소유 자금을 사용한 비용으로서 보상(변제)받지 아니할 것
 - 2) 소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
 - 3)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 가능할 것
 - * 우리나라의 적격증빙수취제도와 유사하며, Division 900 of ITAA 1997에 명시

○ 비용지출 사실 입증 서류(Records)

- 고용주로부터 수취한 급여명세표(payment summaries)
-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확인서(Statements)
- 배당금 지급명세표(Dividend statements)
- 각종 영수증과 송장(Receipts and Invoice)
- 각종 계약서, 임차 계약서(Contracts, tenant)
- 고욧관련 비용이 \$300을 초과하는 경우 문서로 작성된 확인서
- 또한 납세자가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상 지출 비율을 계산하여 신고
- 자본관련 비용은 자본이득세에서 공제되므로 개인 소득세에서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감가상각비와 같은 일부 지출은 공제 가능



- 고용비용 공제는 고용인 신분으로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세 신고시 공제 가능하나, 사업자가 본인사업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인정 불가
- 생계에 필요한 공구 등을 구입한 비용은 공제가능하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인정 불가

○ 주요 사업관련 필요경비 내역(Deductions for business)

- 사업관련 광고비용, 차량 관련 비용, 출장 및 출퇴근 비용
- 은행 이자비용, 세탁비용, 세금업무 처리 비용
- 집을 사무실로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 휴대폰, 인터넷, 사무실전화 관련 비용
- 자기 교육 비용, 각종 장비 구입비용
- 이자비용 및 배당금 지급 소요 비용 등

3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



□ 개인소득세액 계산 구조

| 구분 | 내 용 |
|-----|---|
| | 정상소득(Ordinary Income) + 법정소득(Statuary Income) |
| (-) | 비과세소득(Exempt Income) |
| (-) | 과세제외소득(Non Assessable Income) |
| = |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 |
| (-) | 필요경비(Allowable Deduction) |
| = | 과세소득(Taxable Income) |
| (×) | 구간별 세율(Relevant Tax Rate) |
| = | 산출세액(Primary Tax Liability) |
| (±) | 의료보험료 등 기타부담금 |
| (-) | 세액공제(Offsets) |
| = | 납부세액(Net tax) |

□ 세액공제(Tax Offset)

○ 세액공제(Tax offset 또는 Rebates)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태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형태로서, 납부할 세액을 경감 시키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환급 불가

○ 주요 세액공제항목(Tax offset)

- 건강보험관련비용(Health Insurance)
- 환자이거나 환자를 돌보는 경우(Invalid or Invalid carer)
- 저소득층 공제(Low income earner)
- 의료비공제(Medical expenses)
- 노년 연금 수급층 공제(Senior Australians ad pensioners)
- 연금관련 세액공제(Super related offset)
- 특정지역 복무 공제(Zones and overseas forces)
- 납세자가 호주 정부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수령한 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도 적용 불가능
- 건강보험관련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연령이나 가족 전체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
-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 16세 이하의 자녀,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힘든 경우 일정한 세액공제 적용
- 질병으로 인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아래 3가지 연금 중 한 가지를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 1) a disability support pension under SSA1991
 - 2) a special needs disability support pension under SSA1991
 - 3) an invalidity service pension under VEA 1986
- 세법상 호주 거주자인 납세자가 일정금액 기준 이하의 소득만 있을 경우 저소득층 공제 적용 가능하며, 별도 신청 없이 과세관청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개별 납세자마다 차등 적용



- 납세자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66,667이하인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며, \$37,000이하인 경우 최대 \$445까지 적용가능
- 의료비 공제는 점점 세액공제 항목에서 사라지는 추세이며, 2015~2018 의료비 공제는 장애인 관련 의료비용이나 간병비용 또는 노인 관련 비용만 인정
 -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나, 의료비 공제는 환급 가능

4 신고 및 납부 7



□ 신고 납부 기간

- 호주의 소득세법상 과세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
 - 등록된 세무대리인은 대부분 별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일정이 있으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감일 이후에도 소득세 신고서 제출 가능
 - 과세연도 종료 전 호주에서 영구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전 소득세 신고 완료 필요

□ 신고방법 및 관련 서류

- My tax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
 - My tax는 호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웹기반 프로그램으로서, 접속 후 my gov 계정을 생성한 후 직접 신고 가능
 - 2016년 8월부터 고용주나 은행, 정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납세자 본인의 개인 공제내역 데이터가 사전 입력되어 납세자 편의 제공

- 감가상각비 자동계산, 이전 과세기간 신고서 수정 제출 등이 가능하며, 좋이 신고서에 비해 환급액 지급 기간이 적게 소요

○ 등록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

- 공인세무사협회(Tax Practitioners Board)에 등록된 세무사를 통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가능

○ 종이 신고서 우편 제출

- 신문 등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배포하는 Tax Pack을 통하여 신고서 작성 완료 후 호주 국세청에 우편 발송
- My tax를 이용하는 것보다 환급액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장기간(약 50일) 소요

○ Tax help 프로그램 이용

-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호주 국세청에서 교육을 받고 인증된 자원봉사자의 도움 요청 가능
- 2015~2016 과세연도 기준 과세소득이 \$50,000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 이며, 호주 국세청(13 28 61)에 전화 예약 후 방문 가능
 - * 사업자, 임대용 부동산 소유자, 자본소득 발생자, 펀드나 신탁에서 배당금을 수령한자, 외국 연금을 수령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 신고 관련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5년간 필수적으로 보관 필요



5 의료부담금 (Medicare Levy) 7



- 의료부담금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의 부담금은 경감 또는 면제 가능
 - 2015~2016 과세연도 기준 과세소득이 \$21,335 이하이이면 완전면제, \$26,668 이하이면 부분면제됨
- 비거주자는 의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2015~2016 과세연도 기준 \$90,000이상 소득자는 추가부담금 납부 대상

6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 연간 공실 요금(Annual Vacacy Fee)
 - 호주 정부는 호주 내 주택공급률 상승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부터 외국인이 호주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면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공실요금(Vacancy Fee) 부과
- 자본이익 유보제(Capital gains withholding)
 - 2017~2018 과세연도부터 외국인 거주자들이 호주 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Capital Gain Tax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개정
- 암호화폐(Cryptocurrency)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2017~2018 과세 연도부터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개정
- 임대목적 중고 자산의 감가상각제도 폐지(Rental Properties)
 - 2017년 1월부터 임대목적으로 중고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상 필요경비 불인정

법인세

IV

| 1 | 나내 | വ | ᄆᅚ | _ / | / / Q |
|----|----|---|----|-----|-------|
| Ι. | ᆸᄭ | ᅴ | 무지 | · / | 40 |

- 2. 회계처리 방법 / 49
 - 3. 법인세 세율 / 49
 - 4. 법인세 산출 / 51
- 5.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 55
- 6. 세무조정과 손실의 공제 / 56
 - 7. 법인세 신고납부 / 57





1 납세의무자



- 법인사업자에 대한 거주자 요건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호주 거주 법인으로 인정
 - ① 호주에 직접 법인 설립
 - ② 호주에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호주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
 - ③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호주 거주자인 경우
-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의 납세의무 차이
 - 호주 거주법인은 개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호주 내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소득은 물론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법인은 호주 국내 원천소득과 양도소득만 과세
 - 특정 급여·배당·지점소득을 제외하고, 거주 법인에 귀속되는 국외 원천소득은 호주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
 - 국외소득과 관련된 비용과 공제가 국외원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국외원천소득과 상계 불가능
 - 호주 거주자가 지급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액은 국외소득에 대하여 호주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
 -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즉 초과 공제액은 5년까지 이월 가능하나 소급공제는 허용 불가
-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
 - 법인의 형태는 거주여부에 따라 거주법인 및 비거주법인으로 분류되고, 다시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으로 구분
 - 과세목적상 공개법인은 ① 주식이 호주 또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② 협동조합법인, ③ 공익법인, ④ 상호생명보험회사 및 약사협동조합, 공기업 등



- 비공개법인은 공개법인이 아닌 그 외의 법인을 지칭하며, 비공개법인의 주주, 임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대여금 등은 조세회피 방지규정 적용

2 회계처리 방법 -



- 법인사업자가 취득한 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는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호주 국세청에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운영
 - (현금주의) 납세자가 현금주의(Cash Basis) 회계를 선택한 경우 거래의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대가를 수령한 사업연도에 당해 소득 계상
 - (발생주의) 납세자가 발생주의(Accruals Basis) 회계를 선택한 경우 특정 거래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도 거래가 완료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상
 - * 거래 발생 전 대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선수금) 당해 연도 소득에 미산입

3 법인세 세율 -



- 호주 세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과세요건과 납세의무 등을 모두 소득세법에서 규정
-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국회와 관련 정부 기관에서 법인세율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



- 법인세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entities)의 매출액 기준이 2018~2019 사업연도부터 5천만달러로 상향조정될 예정 * 당초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2,500만 달러
- 또한 중소기업의 수동소득(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및 임대료)는 전체 법인 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하며, 동 규정은 2017~2018 사업연도 부터 2023~2024 사업연도까지 적용 예정
- 향후 10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2026~2027 사업연도에는 25%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
 - ①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2017~2018 과세연도)

| 소득구분(Income category) | 세율(rate) |
|-----------------------------|----------|
| 기본세율 법인(Base rate entities) | 27.5% |
| 기타법인(otherwise) | 30% |

② 생명보험회사의 법인세율(2017~2018 과세연도)

| 소득구분(Income category) | 세율(rate) | |
|-----------------------|----------|--|
| 일반 소득 | 30% | |
| 근로자 퇴직연금 | 15% | |
| TFN이 없는 분담금 소득 | 32% | |

③ 퇴직연금기금의 법인세율(2017~2018 과세연도)

| 소득구분(Inco | 세율(rate) | |
|--------------------|----------|-------|
| 퇴직연금 | 15% | |
| TFN이 없는 분담금 소득 | | 32% |
| 일반소득 | 기본세율 적용 | 27.5% |
| | 기타법인 | 30% |

④ 공동발전기금의 법인세율(2017~2018 과세연도)

| 소득구분(Income category) | | 세율(rate) | | |
|-----------------------|---------|----------|--|--|
| 중소규모 법인 | | 15% | | |
| 미규제 투자 | | 25% | | |
| PDF 초과분 | 기본세율 적용 | 27.5% | | |
| | 기타법인 | 30% | | |



⑤ 신용조합의 법인세율(2017~2018 과세연도)

| 소득구분(Income category) | 세율(rate) |
|----------------------------------|----------|
| 소규모(under \$50,000 : 기본세율) | 27.5% |
| 소규모(under \$50,000 : 기타) | 30% |
| 중규모(\$50,000 - \$149,999 : 기본세율) | 41.25% |
| 중규모(\$50,000 - \$149,999 : 기타) | 45% |
| 대규모(\$150,000 and over : 기본세율) | 27.5% |
| 대규모(\$150,000 and over : 기타) | 30% |

- 소규모 협동조합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나, 상호부금은 일정 기준충족시 과세 제외

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율(2017~2018 과세연도)

| 소득구분(Income category) | | 세율(rate) |
|-----------------------|----------------------|----------|
| | 과세소득 \$0~\$416 | 0 |
| 일 반 | 과세소득 \$417~\$915 | 55% |
| | 과세소득 \$916 and above | 30% |
| | 과세소득 \$0~\$416 | 0 |
| 기본세율 | 과세소득 \$417~\$831 | 55% |
| | 과세소득 \$832 and above | 27.5% |

4 법인세 산출 🔻



□ 법인세 과세소득(Taxable Income)

○ 법인세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총 소득(Total Incom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



- (총 소득) 호주 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모든 수익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판례를 통해 과세 소득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
- (총 비용) 소득세법에 명시된 필요경비(Deduction)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상 발생한 원가를 지칭
- (조정항목)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정(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조정)을 통해 최종적인 과세소득 산출

□ 법인세 계산구조

| 구분 | 내 용 |
|-----|------------------------------------|
| | 총 소득(Total Income) |
| (-) | 총 비용(Total Expenses) |
| = | 총 이익 또는 총 손실(Total profit or loss) |
| (±) | 조정항목(Reconciliation), 익금·손금산입 |
| = | 과세소득(Taxable Income) |
| (×) | 구간별 세율(Relevant Tax Rate) |
| (±) | R&D 관련 추가세액 |
| = | 총세액(Gross Tax) |
| (-) |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
| (-) | 세액공제(Offsets) |
| = | 납부세액(Tax payable) |
| (-) | 기타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
| = | 순세액(Net tax) |

□ 총 소득(Total Income)

-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소득이 납세자의 총 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세법에 일부 소득 종류에 대해 명시
 - (국외소득) 호주 거주 법인이 국외에서 받은 소득은 총 소득에 포함 되어야 하며, 취득한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 상이
 - (개인적소득) 납세자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소득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 개인의 기여한 경우 PSI(personal service income)로 신고
 - (크라우드펀딩) 자금이 부족한 사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취득한 소득은 총 소득에 포함(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 (공유사업)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여러 사람이 공동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총 소득에 포함
 - (현금수입)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총 소득에 포함
 -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 국세청도 납세자들의 현금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
 - (영업외수익) 부동산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와 같은 일시적 수익도 총소득에 포함되나, 일정요건 충족 시 제외
 - (정부기관)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연료세 화급, 와인균등세 화급금 등은 총소득에 포함
 - (기타 각종 소득) 커미션, 투자 수익, 각종 보상 수익 등은 총소득에 포함되며 소득별로 예외 사유 명시



○ 총 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입

- 취미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상속이나 증여받은 소득
-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상품과 부상
- 도박, 복권 관련 소득
- GST 거래징수분
- 대출·대여 받은 금원

□ 총 비용 및 공제(Expenses and Deductions)

-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업관련 비용은 총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나, 사업무관 경비나 자본관련 지출은 공제 불가
- 총 비용관련 Golden-Rule
 - I.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공제
 - Ⅱ. 사업상 목적과 개인적 목적이 혼합된 경우 사업관련 비율만 공제
 - Ⅲ. 지출비용 입증 서류를 반드시 보관
 - (일반적인 사업비용)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용, 임차료, 광고비, 이자비용, 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전화세 등은 총 비용 산입 가능
 - (인건비) 법인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구분 없이 총 비용에 산입가능(Salary, Wage, Super 등)
 - (수선비) 사업용 자산의 수리, 수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비용에 산입 가능하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은 총 비용 불산입
 - (거주지 관련비용) 거주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Home-based business)는 거주지 소유 비용, 대출 비용의 일부를 총 비용에 산입가능
 - (제외비용) 취미·오락 관련 비용, 교통 범칙금, 자녀 양육관련 비용이나 가족을 위한 의류구입 비용 등은 총 비용 불산입



- (감가상각비) 일반적인 자본적 지출은 총 비용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내용연수가 제한된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비용을 총 비용에 산입

○ 감가상각(Depreciation Deductions)

- (대상자산) 컴퓨터, 전기장비, 가구, 차량, 기타 사업관련 장비
- (대상금액) 당초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장부가액 증가액)
- (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중 납세자 선택
- (주의사항) 1년 미만 보유자산은 대상제외, 사업상·개인적 목적으로 혼용한 경우 사업상 비율만 적용,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자산을 사업에 공하는 경우 내용연수 차등 적용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



□ 세액 감면

- 소규모 사업자 감면(Small business concessions)
 - 사업의 형태가 Sole traders, Partnerships, Company, Trusts인 소규모 사업 자는 일정 비율의 세금 감면이 적용
- 주요 생산자 감면(Primary producer concessions)
 - 납세자가 사업상 주요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세금감면 적용
 - * 주요 생산 활동(Primary production activities) :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
- 예술가, 운동선수, 발명가 감면
 - 예술가, 작가, 지휘자, 발명가, 행위예술가, 운동선수 등은 일정 비율의 세금갂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도 1년에 2번으로 축소 가능



□ 세액 공제

- 세액공제(Offsets · Rebates)는 과세소득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나, 공제 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환급 불가)
-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income tax offset)
 - 호주 국세청에 신고한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 * 외국에서 세액이 납부되어야 하며, 호주에서 법인세 신고시 외국 발생 소득이 명확히 구분· 포함되어야 공제 가능
- R&D세액공제(R&D offset)
 - 기업의 R&D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투자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 * 소득금액이 \$20 million 이하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환급은 불가능
- 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Small business income tax offset)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형태로 차감할 수 있으며, sole trading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partnership 또는 trust에서 발생한 소득 중 본인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가능

세무조정과 손실의 공제 🗖



□ 세무조정(Reconciliation activities)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과세소득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 상 산정된 소득에 소득과 지출을 가감하여 과세가능소득(Taxable Income) 산정

□ 손실의 공제(Offset losses)

- 사업자가 당해연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향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토록 이월되며,
 - 사업자가 sole trader이거나 partnership의 구성원일 경우 납세자의 당해 연도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하여 이전 사업연도 소득에서도 공제 가능

7 법인세 신고납부 -



- 호주는 법인세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을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도 소득세와 동일
 -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규정

재화서비스세

V

| 1. | 도입배경 | / | 60 |
|-----|------|---|----|
| • • | 구미매이 | , | 00 |

- 2. 개요 / 60
- 3. 공급과 매입 / 60
- 4. 세금계산서(Issuing tax invoices) / 63
 - 5.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64
 - 6. 호주의 사업자등록번호(ABN) / 65





1 도입배경



- 재화서비스세(GST)는 2000년 7월 1일 폐지된 기존의 Wholesale tax를 대체하기 위해 호주에 도입된 간접세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140여개 국에서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
 - 특정한 물품과 거래를 제외하고 호주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0%세율을 적용하여 운영

2 / 개요 -



- GST는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용역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액의 10%(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GST도 간접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전단계세액공제법 채택
 - 사업자의 연간 소득이 \$75,000(비영리단체의 경우 \$710,000)이상인 경우 GST에 등록하고 일반적으로 연간 4회 호주 국세청에 사업활동보고서 (BAS)를 제출함으로써 신고 종결

3 공급과 매입 -



○ 호주의 GST에서는 다섯 가지 공급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과세 거래 (Taxable sales)와 영세율 거래(GST-free salse) 관련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도 면세 매출 및 과세제외되는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과세 공급(Taxable sales)

-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세공급에 해당되고,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세액으로 거래징수하며,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공급에 해당
 -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함(payment of some kind)
 - 당해 납세자의 사업에 공해야 함(operating your business)
 - 호주와 관련이 있어야 함(connected with Australia)
- 또한, GST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는 1) 매출액의 10%를 물품가액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2) 구매자에게 송장을 발급해야 하며, 3) 사업활동신고서(BAS)에 적정하게 기재하여 제출
 - 공급한 재화와 용역 중 GST가 과세되는 비율이 별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별도 신고가능
 - 재화와 용역의 대가는 금전 또는 대체 재화(용역)로 수령할 수 있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사업용 기자재를 공하는 경우에도 GST가 적용

□ 영세율 공급(GST-free sales)

- GST에 등록한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으나, 당해 재화나 용역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GST credit)은 공제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와 수출지원등을 위하여 수출 하는 재화나 용역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하는 반면,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율 제도를 폭넓게 운용



- 주요 영세율 품목(Main GST-free products and services)
 - 수출품목(Exports of goods) 및 외국항행용역
 - 사업의 양도(Sales of a business ad a going concerned)
 - 기본적인 식료품(most basic food)
 - 교육, 의료, 의약품, 보육 관련 재화와 용역
 - 농업, 장애인 이용 차량, 일부 금속, 면세점 매출
 - 종교활동 관련 재화와 용역

□ 면세 공급(Input Taxed sales)

○ 호주 GST는 일부 금융용역이나 주거용 건물 임대용역 등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면세공급의 경우 매입시 부담한 GST에 대한 공제(credit)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세율 공급과 구분

○ 주요 면세 품목(Main Input taxed sales)

- 금융 용역의 공급(Financial supplies): 자금의 대여, 지분의 양도, 신용 판매 등
- 주거용 부동산 관련(Residential premises):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신축 5년 이내의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GST가 부과됨)
- 상업용 건물 관련 거래는 GST 부과 대상임

□ 비과세 거래

- GST에 등록한 단체가 기부를 위해 기금(Grants and sponsorship)을 조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GST 미적용
 - 보험관련 용역의 경우 GST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개인(법인)사업체와 관련한 보험은 GST 적용



4 세금계산서 (Issuing tax invoices) 🔻



- 매출자가 \$82.5(GST포함) 이상인 품목을 공급한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GST Credit)를 신청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필요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28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자에게 전달
-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관련한 아래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 가능(거래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 필요적 기재 사항이 구체적임)
 - 1) 당해 거래에 대한 거래증빙 목적으로 작성
 - 2) 판매자의 인적사항
 - 3) 판매자의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4)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짜
 - 5) 거래 물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 6) 여러 물품을 동시 거래시 GST 해당여부 표기

| \$1,000미만 매출 세금 | 계산서 예시 | | \$1 | ,000이상 매출 | 세금계 | 산서 | 예시 |
|--|----------------|--|----------|--------------------------|---------------|-------------|---------|
| 1 Tax invoice 2 Windows to Fit Pty Ltd | | 1 Tax invoice 2 Windows to Fit Pty Ltd | | | | | |
| 1/83092/8383/8383/ | | | Qty | Description of supply | Unit price | GST | Total |
| Description of supply Window frames 5 | Total \$825 | 5 | 50 10 | Window frames Deadlocks | \$150 \$40 | \$15 \$4 | \$8,250 |
| William Italies | 9020 | | 10 | Decidioons | φ40 | 6 | ψ440 |
| | | | тот | AL AMOUNT PAYABLE | | | \$8,690 |
| TOTAL PRICE INCLUDING GST | \$825 6 | | The | total price includes GST | | | 7 |
| TOTAL PHICE INCLUDING GST | \$825 6 | | | | | | EA |



- 호주 국세청은 사업자가 GST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를 위해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할 것을 권유
 - Business accounting software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납세자의 매출·매입에 대한 정보가 즉시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
 - GST 거래징수 목적으로 별도 계좌를 생성
 - 현금주의 회계(Cach accounting)선택

5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 신고·납부하며, 예외적으로 월간·연간 신고납부 가능
 - 호주 국세청에서는 각 과세기간(3개월) 종료일 2주전 납세자가 제출 해야할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기본사항 등을 명시한 후 개별 발송하며, 납세자는 이를 작성하여 호주 국세청에 회신
 -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BAS 서식에 해당 납세자의 신고 형태에 따른 신고· 납부 종료일 명시
 - 분기별 신고납부자 또는 연간 신고납부자인 납세자는 본인이 선택할 경우 월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GST 신고납부 주기를 변경할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능
 - 신고·납부 주기별로 GST 신고서 작성방법은 차이가 있으며, ①Full reporting, ② simpler BAS reporting, ③ GST instalments(분기별 납부·연간 신고)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 가능



○ 신고납부 주기별 구분 및 신고납부기한

| 구 분 | 적 용 대 상 | 신고납부기한 |
|-------------------|--|--------------|
| 월 간 | 연간 GST turnover가 2천만달러(\$20million) 이상인 경우 호주 국세청에서 월간신고납부자로 개별통보 | 해당 월의 말일로 |
| (monthly) | 받은 자 | 부터 21일이 되는 날 |
| 분기별 | 연간 GST turnover가 2천만달러(\$20million) 미만인 경우 국세청에서 월간신고납부자로 통보하지 | 분기 마지막 달의 |
| (quarterly) | 아니한 경우 | 다음달 28일까지 |
| 연 간 (annually) | • 연간 GST turnover가 \$75,000미만이나 자진 하여 GST에 등록한 경우 | 다음해 2월 28일까지 |

^{*} GST turnover는 GST를 제외한 공급가액임.

호주의 사업자등록번호 (ABN)



- 호주의 사업자등록번호(ABN)는 호주 국세청의 하부기관인 호주사업 등록부(ABR)이 발급하는 11자리 고유번호로서,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
 -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연간 소득이 \$75,000이상이거나 택시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 GST의 신고·납부 및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ABN은 필수이며, ABN이 없는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47% 원천징수율 적용

자본이득세

$\overline{\mathbf{V}}$

| | | 1. 개요 / | 00 |
|----|------|------------------------|------|
| 2. | 과세대상 | 자산 및 면제대상(CGT assets) | 68 |
| | | 3. 과세대상 사건(CGT events) | 69 |
| | | 4. 롤오버(Rollover) | 70 |
| | 5.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 | 71 |
| | | 6. 비거주자의 CGT / | / 71 |





1 - 개요 -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 CGT)는 1985년 9월 20일 최초 도입되었으며, 해당 자본의 양도대가에서 취득할 때 지출한 취득원가의 차이(자본이익)에 대하여 과세
 - 자본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합산하여 과세되며,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개인 소득세 등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 * 당해연도 과세기간에 다른 자본이익이 없는 경우 소급 또는 이월공제 가능

2

과세대상 자산 및 면제대상(CGT assets)▼



- 자본이득세법 시행일인 1985년 9월 20일 이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CGT가 과세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과세대상에 포함
 - 부동산, 주식, 특허, 외화, 계약상 권리, 투자신탁 자산등 유형·무형 자산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법률에서 면제 대상 으로 명시한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 자산이 CGT 과세대상으로 규정

○ 주요 CGT 면세대상

- 주요 거주시설(일부는 예외적으로 과세)
- 차량, 오토바이등 운송수단(1톤 이하, 9인 이하)
-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10,000이하 물품
- 개인적으로 수집한 \$800이하 물품(귀금속 포함)
- 사업에 공하는 감가상각자산
- 면세소득이나 과세제외소득을 취득할 목적으로만 사용된 자산
- 복권 당첨금, 직업 관련 보상금 등



-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가액 등을 영어로 작성된 장부에 기록 하여야 하며, 취득 이후 자산의 가치 변동 소유 지분 변동 등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도록 명시
 - 호주 거주자는 호주 내에 보유한 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보유한 자산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 발생

3 → 과세대상 사건 (CGT events) ▼



- 자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과세대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산의 멸실, 자산 신규 취득, 특허권 등록 등도 자본이득이 발생한 시점 으로 간주
 - 일반적인 양수도 계약에 의한 과세대상 사건의 발생시점은 자산이나 자본의 점유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시점으로 간주
 - 자산의 멸실이나 분실의 경우 과세대상 사건의 발생시점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시점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멸실이나 분실이 발생한 시점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 간주

○ 주요 CGT EVENT의 유형

- 자산의 양도(Disposal)
- 임대구매(Hire purchase)
- 자산의 발생 및 소멸(Existence · End of assets)
- 신탁자산(Trusts), 임차(Leases), 주식(Shares)
- 거주자 지위상실(Cessation of residency)
- 롤오버 관련 과세사건
- 합병(Consolidation)



4 롤오버 (Rollover) 🤻



- 일정한 CGT 과세대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추후 다른 과세대상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하였다가 합산 신고하는 제도
 - 양도자가 당초 취득시 지불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거나, 유사한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당초 자산의 취득 가액을 대체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체취득한 자산을 양도할때까지 CGT 과세 유보 가능
-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rollover가 가능 하며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추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CGT 과세 이연
 - 결혼이나 이혼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당초 배우자가 최초 취득당시에 지불한 금액을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
- 납세자의 자산이 멸실, 붕괴,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rollover 가능
 - 비자발적인 자산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rollover를 신청하거나, CGT 도입 이전 취득자산일 경우 CGT면제 가능
-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주주로써 신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Rollover가 가능하며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주식의 취득・양도관련 CGT도 rollover 가능
- 기타 rollover가 가능한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자산의 소유권 이전
 -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개인자산을 회사에 출자한 경우
 - 회사 자산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 특정 고정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



5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 7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넓은 rollover가 인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CGT 면제
 - (15-year exemption) 55세 이상인 납세자가 15년 이상 소규모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CGT 면제
 - (50% active asset reduction) 12개월 이상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CGT 50%면제
 - (Retirement exemption) 사업에 공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CGT 면제는 \$500,000까지만 적용되며, 55세 이하인 경우 CGT를 연금펀드나 퇴직 연금으로 납부 가능
 - (Rollover)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2년간 과세 이연 신청 가능
 - *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연간 소득이 \$2million 이하여야 하며, 당해 자산이 \$6million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

6 / 비거주자의 CGT



- 비거주자는 호주 내에 소재한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CGT가 적용 되며, 거주자는 호주 외에 소재한 자산에 대하여도 CGT 과세
 - 비거주자나 임시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당초 소유 자산에 대한 가치는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의 시장가액으로 평가
 - 거주자가 비거주자나 임시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소유 자산에 대한 가치는 거주구분이 전환된 시점의 시장가액으로 평가



- 비거주자는 주요 거주지 양도 관련 CGT면제를 신청할 수 없으나, CGT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면제 가능
- 현재 임시거주자인 납세자가 2006년 5월 6일부터 거주자 자격을 유지하였으면, 현재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CGT 면제 가능
- 과세대상 호주 자산
 - 호주에 소재하는 직·간접적 물적재산 및 권리
 - 호주에 위치하고 있는 광물, 석유 등 자원에 관한 관리
 - 호주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기타세제, 지방세, 원천징수

VII

- 1. 기타세제 / 74
- 2.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 75
 - 3. 지방세 / 77
 - 4. 원천징수(Pay As You Go) / 80





1 기타세제 -



□ 고급자동차세(Luxury-Car-Tax)

- 호주는 고급자동차에 대해 33% 세율의 고급자동차세를 부과하며,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는 연간 1회 신고·납부의무 규정
 -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수출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차량 제조사의 성능 점검 평가 목적 등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LCT 면제
- 세율은 33%로 일정하나, 과세대상 차량 가액은 매년 변동되며, 고효율 차량은 일반차량보다 낮은 기준 적용

| <lct th="" 과세대상="" 차량가약<=""><th><lct< th=""><th>과세대상</th><th>차량가액></th></lct<></th></lct> | <lct< th=""><th>과세대상</th><th>차량가액></th></lct<> | 과세대상 | 차량가액> |
|--|---|------|-------|
|--|---|------|-------|

| 과세연도 | 고효율차량 | 일반차량 |
|-----------|----------|----------|
| 2018~2019 | \$72,526 | \$66,331 |
| 2017~2018 | \$72,526 | \$65,094 |
| 2016~2017 | \$72,526 | \$64,132 |
| 2015~2016 | \$75,375 | \$63,184 |
| 2014~2015 | \$75,375 | \$61,884 |
| 2012~2013 | \$75,375 | \$60,316 |
| 2011~2012 | \$75,375 | \$59,133 |

^{*} 과세연도 별로 상기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고급자동차에 대하여 33%부과

□ 와인균등세(Wine Equlisation Tax)

- 호주에서는 와인 등 주류를 제조, 수입, 도매하는 경우 주류 도매가격의 29%에 해당하는 세금이 WET로 부과
 - WET는 GST에 등록한 사업자만 신고·납부 가능하므로, GST 등록절차 필요



- WET는 일반적으로 주류 도매상, 주류 제조업자, 수출업자 등에게 부과 되며, 주류 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소매업자는 판매가격에 WET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거래징수 불필요
 - WET는 GST가 포함된 주류의 가격의 29%가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알코올 함유량이 1.15%이상인 주류

□ 유류세 환급(Fuel Tax Credit)

- 납세자가 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유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유류세 환급 청구가능
 - 사업에 공하는 자산이 기계, 대형 플랜트, 장비, 트럭 등 대형차량 등인 경우 환급 청구 가능
- 환급되는 유류세는 연료의 종류와 취득시기,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BAS 제출 주기에 따라 환급 적용 세율 변경
 - 최소 환급 적용세율은 5.3%이며 최대 38.15%까지 환급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호주 국세청 사이트의 유류세 사전 계산 항목을 이용하여 신청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할 것을 권장

2 부가급여세 (Fringe benefit tax) -



□ 개요

- 부가급여세는 일반적인 급여외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 및 관련인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납부의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있으며, \$3,000이상 FBT 납부자의 경우 분기별로 BAS 제출



- FBT의 과세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서는 매년 5월 21일까지 제출

□ FBT 대상 항목

- 부가급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은 여러 분류로 구분되며 분류별로 특정한 평가방법이 법률에 규정
 - (자동차) 사업주가 피고용인(근로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경우 FBT 과세대상에 해당
 - * 차량은 세단이나 픽업트럭 등 1톤 이하 차량으로 9인승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이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 제외
 - (식사, 오락 등) 식사, 음료, 숙박, 관광, 운동경기, 여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 경우 FBT 과세대상에 해당
 - * 식사, 오락 관련 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과세제외
 - (비용부담) 회사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등 금전적인 부담을 대신 해결하거나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FBT 과세대상에 해당
 - (채무면제) 회사가 근로자의 채무(회사에 대한)를 탕감해준 경우 FBT 과세대상에 해당
 -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됨
 - (주택관련비용) 회사에서 근로자의 주거지(주요 생활근거지) 사용 대가를 대신 지불하거나, 주거지를 무상 임대한 경우 FBT 과세대상에 해당
 - * 근로자의 주요 생활시설이 호텔이나 모텔, 게스트하우스인 경우에도 시설 이용료를 대납한 경우 과세대상
 - (재산관련비용)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 경우 FBT 과세대상에 해당
 - * 옷, 가구, 가전제품,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됨
 - (기타항목) 항공료, 오락시설 이용, 주차비용 등



□ 세율 및 기타사항

- FBT의 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45%) + 의료부담금(2%)의 합계인 47%이며, 납부된 FBT는 사업주의 소득세 신고시 공제가능
 - (신고서 제출) FBT신고서는 5월 21일까지 전자제출, 우편제출, 세무 대리인 제출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 (제출항목) 사업주가 제공한 benefit의 총액과 각 benefit 항목별 금액, 관련 근로자의 수, 전체 과세금액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FBT 면제 항목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benefit 중 일부 항목은 FBT가 면제되며, 이러한 항목은 대부분 직접적인 근로활동과 연관되는 경우로 한정
 - 컴퓨터, 태블릿PC, 소프트웨어, 보호장비·의류, 서류가방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장비
 - \$300 이하의 소액 benefit, 근로자가 업무상 택시를 이용한 경우
 - 소규모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한 경우

3 지방세 -



□ 개요

-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마다 산업별·지리적 특성에 따라 별도 세금을 징수
 - 州(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지불급여세(Patroll tax), 인지세 (Stamp duty), 토지세(Land tax)등이며, 국세는 연방정부에서 징수하여 보조금 형태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교부
 - * NSW주의 지방세수 비중은 payroll tax(33%), stamp duties(26%). landtax (11%)등이며, 도박 관련 세금, 주차장관련 부담금도 징수



□ 지불급여세(Payroll Tax)

- 지불급여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수 중 가장 큰 비율 차지
 - 한달간 지급한 총 급여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지급한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OSR(Office of State Revenue)에 등록·납부

* NSW의 지불급여세율은 5.45%이며, 납부 한도는 \$750,000

□ 인지세(Stamp duty)

-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각 주마다 세수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차량, 금융 및 자본거래에 대하여 과세
 -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 후 2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주정부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납시 가산세 부과
 - 신축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고 완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550,000 이하의 주택은 인지세 면제
 - * 부동산 구입가액이 \$300,000이면 \$8,990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가액에 따라 최대 단계적으로 상승

□ 토지세(Land Tax)

- 주정부에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이나 농장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투자목적 비주거용 토지나 상업용 토지가 과세대상
 -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합산하여 납부가능하며, 토지의 감정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2%의 세율 적용
 - 본인소유 토지의 감정가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주정부에 이의신청 가능



○ 토지세 과세대상(NSW주)

- 공지(vacant land)
- 주택부지, 주거용 빌라의 부지(land where a house, residential unit)
- 휴양주택(holiday home)
- 공장부지(company title units)
- 상업목적용 부동산 부지(commercial properties)
- 주정부로부터 임차한 토지(land lease from state)

□ 주차장 부담금(Parking Space Levy)

-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에 위치한 주차공간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상업지구, 사무실 주차공간, 주차목적 공터 등에 부과
 - 주차장 부담금은 시드시 시내를 중심으로 2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
 - * (1구간, 연 \$2,160) 시드니시, 북시드니, 밀슨스포인트 상업지구
 - * (2구간, 연 \$770) 파라마타, 체스트우드, 본다이정션 등

□ 기타 지방정부 세금

- 재산세(Property Rates)
 -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토지의 가치와 부동산의 분류에 따라 부과
- 쓰레기 처리비용(Waste Services charge)
 -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시 청소 및 재활용 처리비용 납부
- 폭우 관리비용(Stormwater charge)
 - 부동산 소유자는 폭우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해 일정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는 연간 \$24, 부동산관리회사는 연간 \$12.5 부과



- 각종 사용료(User Charge)
 - 지방정부법 제608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각종 서비스, 재화, 용역, 인허가를 제공받을 시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 납부
 - 각종 인허가 신청 수수료, 증명서 발급수수료, 도료 점용료, 공공시설 이용료 등 포함

4 원천징수 (Pay As You Go) 7



□ 원천징수의 개요

- 원천징수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고용주)가 대가를 수령하는 자(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호주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운영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 소득 등이며 각 소득 구분별로 원천징수 세율 별도 구분
-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 가능
 - (정액 원천징수)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일정액을 매월 원천징수함으로서 분기별 납부세액을 명확히 파악 가능
 - (자기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매월 원천징수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납부함으로서 추후 추가납부 및 환급 절차 생략 가능

□ 원천징수 의무자 및 세율

○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자(개인, 기업, 파트너십, 비영리단체 등)는 모두 워천징수 의무자로 간주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정해진 납기 내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연간 원천징수 보고서 제출 의무
- ABN이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46.5%이며, 비거주자에게는 45%세율이 적용되며, 일반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징수보고서 제출시 모든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요약보고서와 관련 근거 서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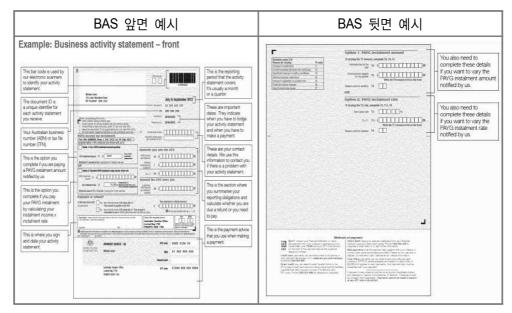
□ 납부

- 대규모 원천징수의무자는 1주일 단위로 전자납부 하여야 하며, 중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는 월단위로 세금 납부
 - 소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자납부나 기타 방법으로 분기별 납부를 해야 하며, 분기별 납부는 원천징수를 한 달의 다음달 21일,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21일까지 세금 납부

□ 이자·배당·사용료소득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이자소득)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10%이나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의거 15%로 적용
 - * 비실명차입금 이자등 특정 이자소득은 46.5% 고율로 원천징수
 - (배당소득)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30%이나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조세조약에 의거 15%로 적용
 - (사용료소득) 사용료소득(royalty)에 대한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30%이나 대한민국 거주자의 경우조세조약에 의거 15%로 적용





납세성실도 관리방안 및 조세 불복제도

III

1. 납세성실도 관리방안 / 84

2. 불복제도 / 88





1 납세성실도 관리방안



□ 사후검증제도

- 납세자가 각종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과세표준·필요경비·각종 공제 등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
 - 환급세액확인(Tax Refund Checks), 소규모 사업 기준분석(Small Business benchmark),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등의 방법을 사용
 - 사후검증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탈루 사실이 확보된 경우, 기타 사유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실시

□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

- 납세자의 신고자료와 호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비교·분석 하여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 호주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 상호 간의 신고자료, 은행이나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상호대사(Cross Check)하여 신고 내용 적정여부 판단
 -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사전안내(Pre-fill information)를 참고하여 신고 시 신고오류 사전 방지 가능
 - * 수입금액 파악이 어려운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적으로 검토
 -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 해외 수입, 정부기관에서 수령한 매출 대금, 공동사업이나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호주 국세청 데이터에서 확인 가능



□ 환급세액 확인(Tax Refund Check)

- 호주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환급 신고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BAS상 신고자료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분석
 - 환급 신고 세액의 크기, 직년연도 사업과 비교하여 환급세액의 추이, 사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급 신고 적정여부 검토
- 고위험 환급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추가 분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사업규모가 작은 납세자가 고액 환급을 신청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대비 환급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누적된 소액 환급을 1회에 신청하는 경우
 - 납세자가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지 의심되는 경우

□ 소규모 사업 기준분석(Small business benchmark)

-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유사한 규모의 납세자들의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신고적정여부 확인
 - 납세자의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인건비·기타 판관비의 신고비율을 확인하여 경쟁 업체들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
 - 호주 국세청은 1.4million개의 소규모 사업자 신고내역을 보유하고 있고, 100여가 업종에 대한 신고자료를 빅데이터 형태로 관리
 - 수입금액별, 업종별 적정 신고범위를 미리 확정하고, 납세자의 신고 비율이 당해 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 추가 절차 생략 가능



<예시: 커피숍을 운영하는 홍길동씨의 소규모 사업분석 적용>

① 홍길동씨의 커피숍의 2018 과세년도 신고 내역

| 구 분 | 금 액 |
|----------------------------------|-----------|
| Total business income | \$705,200 |
| Cost of sales | \$253,300 |
| Salary, Wages and Superannuation | \$189,400 |
| Payments to associated parties | \$50,000 |
| Rent | \$85,800 |
| Other expenses | \$97,000 |

② 해당 업종의 주요 수입ㆍ비용 비율

| | Annual turnover range | | |
|------------------------------------|------------------------|-------------------------|------------------------|
| Key benchmark range | \$65,000- \$250,000 | \$250,001- \$600,000 | More than \$600,000 |
| Cost of sales / Turnover | 35%-42% | 35%-41% | 32%-38% |
| Average cost of sales | 39% | 38% | 35% |
| Total expenses / turnover | 78%-88% | 84%-92% | 87%-93% |
| Average total expenses | 83% | 88% | 90% |
| Non-capital purchase / total sales | 58%-71% | 55%-66% | 51%-60% |

③ 홍길동씨의 비율분석

- Cost of Sales / Turnover = $(\$253,300 / \$705,200) \times 100 = 35.92\%$
 - · 홍길동씨의 Cost of sales / Turnover 비율은 35.92%, 매출구간이 \$600,000이상이며 이는 32%~38%에 포함되므로 정상 수치에 해당
- Total expenses / Turnover = $(\$625,500 / \$705,200) \times 100 = 88.7\%$
 - · 홍길동씨의 Total expenses* / Turnover 비율은 88.7%, 매출구간이 \$600,000이상이며 이는 87%~93%에 포함되므로 정상 수치에 해당
 - * Total expenses = All expenses Payments to associated parties



□ 세무조사(Audit)

- 세무조사는 Review 결과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실시하는게 원칙이나, 간단한 쟁점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거나, 납세자가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 가능
 -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는 납세자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협력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부분조사(Specific-issue Audits)
 - 조사 대상 과세기간은 1년에서 다수 년으로 광범위하나 조사대상은 하나의 주제 또는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정
- 통합조사(Comprehensive Audits)
 - 조사 대상 과세기간은 부분조사와 동일하나, 조사대상은 복수의 주제 이며, 관련기업과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포함
- 이전가격 조사(Transfer priceing Review)
 - 해외에서 있는 관련기업과 거래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정상가격 산정시 사용된 방법, 증빙서류의 적절성 등을 판단
- 조사의 진행 과정
 - (사전통지) 우편으로 사전통지하거나, 전화로 미리 약속한 후 미팅에서 사전통지서를 교부
 - * 사전통지 제외대상(장부 소각 등 증거인멸 우려)일 경우 사전통지 생략
 - (최초면담)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절차, 조사의 범위, 조사 대상기간, 조사기간에 대해 공지
 - (조사진행①) 최초 면담 후 상호 일과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며, 세무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증빙서류를 준비·제출할 시간적 여유 부여



- (조사진행②) 조사내용과 진술 등에 대한 녹음이나 기록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며, 조사관련 진행상황은 납세자에게 수시로 공지
- (조사진행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자료, 증빙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검토 후 신속히 반환
- (조사진행④)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된 제3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가능
- (조사종결) 조사내용에 따른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근거와 부과된 세액 및 벌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설명

2 불복제도



□ 이의신청(Objection)

- 호주 세법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과세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
 -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서류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되어야 하며, 세무 대리인이나 가족,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호주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
- 이의신청서 작성시 필수 항목
 - 납세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잘못된 과세처분임을 주장하는 근거)
 - 납세자의 주장과 제출한 근거서류가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는 선언
 - 제출일자 및 납세자 본인 서명
 - 이의신청 관련 과세연도 및 과세기간
 - 청구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 이의신청 대상 과세처분과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과세처분

|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미대상 |
|-------------------------------|--------------|
| ABN 넘버, Excise 등 | 일반적인 이자 징수 |
|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 이자 면제 불가 결정 |
| 유류세환급(Fuel tax credits) | 이자 징수 부족분 |
| 재화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 세금 지연 납부 이자 |
|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 벌과금 면제 불가 결정 |
| 연금(superannuation) 등 | 연금 기여금 납부 |

○ 이의신청 제출기한

-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기한은 60일에서 4년까지 항목별로 차등 적용되며, 부과처분에 관한 문서 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
 - * 신청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자동연장됨.
- 납세자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신청기한 연장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시 신청기한 연장 가능
 - * 기한 연장 신청서 승인시 제출기한이 연장됨.

○ 이의신청 처리기한

-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60일이며, 처리기한 도과시점까지 국세청에서 결과통지가 없을 경우, 당해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
- 이의신청서 접수 후 관련부서에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등 협조 요구 가능
- 청구인이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수령하거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외부기관에 상급심 청구 가능
 - *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또는 연방법원(Federal court)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신청기한은 2년~4년이며, 사기·부정한 경우는 기한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 2년
- 법인사업자, 신탁 및 파트너쉽: 4년
- 신청서 접수시 처리기간은 신청방법과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14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초 처리기한내 처리 불가 시, 상호 합의를 통해 처리기한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처리기간 | | |
|------------|------|------|--|
| 입구경합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
| 전화 및 팩스 | 14일 | 50일 | |
| 온라인(세무대리인) | 14일 | 20일 | |

한·호주 FTA와 호주 투자

IX

- 1.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 92
- 2. 호주 투자 환경 및 투자 정책 / 94
 - 3. 주요 투자법 내용 / 101
 - 4. 호주 투자 진출 형태 / 103





1 한 · 호주 자유무역협정(FTA) ▼



□ 한·호주 FTA 발효

○ 2014년 12월 2일 국회비준을 통과해 2014년 12월 12일 발효된 한·호주 FTA는 두 국가 간 무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한·호주 FTA 체결내용

- 한·호주 FTA는 양국 간 상품교역 대다수 품목의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국 간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관세 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음.
 - FTA 협정 발효 이후 즉시 철폐되는 관세품목의 비중은 품목수를 기준 으로 한국은 75.2%, 호주는 90.9%(수입액 기준 한국 72.4%, 호주 86.3%)이며,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한국은 94.3%, 호주는 전체 품목의 100.0%(수입액 기준 한국은 94.6%, 호주는 100.0%)에 이름.
- 대호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가전, 철강, 석유 화학, 일반 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를 통해 경쟁국 대비 유리한 조건을 차지
 - 2018년에는 한·호주 FTA 발효 5년차로 추가 411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 양국 간 전체 교역 품목의 99.4%가 무관세 혜택
- 국내에서 소비하는 지하자워의 약 40%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을 만큼 호주는 주요한 자원 교역 파트너로 발전용 석탄, 제출용 석탄, 철광석, 원유, 천연가스, LPG, 금, 구리광, 아연광, 알미늄 및 니켈 괴 등을 수입 하고 있으며, 호주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짐.



- 한·호주 FTA가 상품교역 외 다루고 있는 주요 분야는 서비스·투자분야, 정부조달, 양국 간 협력 등임
 - 서비스·투자분야의 경우, 한국은 한-미 FTA 수준, 호주는 투자시장 개방은 호-미 FTA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정보 소송제도(ISD: Investor State Dispute) 조항을 도입
 - 정부조달과 관련해 한국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가입국이나 호주의 경우 미가입국으로서, 한·호주 FTA 체결을 통해 양국은 정부조달시장을 상호개방함. (호주 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참조)

□ 호주 정부의 FTA 체결 현황

- 호주는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로서, 2018년 12월 기준 호주가 참여해 발효된 FTA는 10건, 타결된 FTA는 6건, 협상 진행 중인 FTA도 6건임.
 - 발효된 FTA는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태국, 칠레,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과의 FTA임.
 - 타결되었으나 발효는 되지 않은 FTA는 홍콩, 인도네시아, 태평양횡단 협약(TPP), 태평양횡단협약-11(TPP-11), 페루, PACER PLUS(호주, 뉴질 랜드와 14개 남태평양 국가)와의 협정임.
 - 협상 진행 중인 FTA는 유럽연합, 걸프 협력회의, 인도, 환경물품협상, 태평양동맹과의 자유 무역 협정임.

(호주 외무성 홈페이지 참조)



2 호주 투자 환경 및 투자 정책



가. 호주 투자환경

□ 투자 환경

- 25년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한 호주는 2018년 7월 기준 GDP 성장률 3.1%를 달성해 2018년~2020년 타 선진국들과 견주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호주의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국가들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가 크게 기여했고, 호주는 농업, 교육산업, 관광업, 광업, 금융서비스업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해외 기업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
 - 최근 호주의 투자진출 동향을 보면 글로벌 소매 유통 기업들이 호주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가 각각 시드니와 멜버른에 직접 투자 진출함.
 - 영국의 John Lewis, 프랑스 스포츠레저브랜드 Deacathlon, 미국 유통채널 TJX 아울렛 등도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고,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호주 건설 경기가 호황을 이루면서 상업용 부동산 및 임대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진행 중임.

□ 호주 투자 유망분야

○ 호주의 투자 유치 기관인 AUSTRADE(www.austrade.gov.au)는 호주 유망 투자분야를 아래와 같이 선정

| 주요 투자 유치산업 | 호주 주요 산업 투자유치 여건 |
|------------|---------------------------------|
| 농업 및 식품 | 세계적으로 식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호주가 |
| |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는 투자유치에 크게 긍정적으로 |
| | 작용하고 있고, 호주 농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농업관련 |
| | 혁신, 식품가공기술 분야에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



| 주요 투자 유치산업 | 호주 주요 산업 투자유치 여건 |
|----------------|---|
| 주요 인프라구조 | 호주의 탄탄한 경제, 증가하는 인구 수는 주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운영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 하고 있으며,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전문가들과 첨단기술은 새로운 프로젝트, 기존 인프라 개발에 좋은 기회를 제공 |
| 관광 인프라구조 | 호주의 관광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지역과의 지리적 이점, 대자연 유명관광지, 세계적인 와인 생산 등의 이유로 호주 주요 성장산업에 선정됨 |
| 자원 및 에너지 | 풍부하고 다양한 광물자원, 동력자원, 최신 기술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아시아 신흥국들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다양한 범위의 투자기회를 선사 |
| 의료과학 및 과학기술 | 호주의 의료과학은 세계 선두주자로서 생명공학, 제약, 의료기기, 열대의학 등에 뛰어난 연구개발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연구기술과 기업들의 협력연구에 우호적인 문화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 |

□ 주별 투자 환경

- 퀸즐랜드(Queensland, QLD)주
 - 퀸즐랜드주는 기업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의 투자유치 기구가 다수 활동하고 있음.
 - 브리즈번을 포함한 남동 지역에서 투자유치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브리즈번시가 운영하는 'Choose Brisbane'이 기업유치 활동을 담당함.
- 빅토리아(Victoriasland, VIC)주
 - Bupa, Toyota, ExxonMobil, VIVA Energy 등 세계적 기업 다수와 호주 대기업들의 호주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빅토리아주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Standard&Poor, Moody's에서 매우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으며, 빅토리아 주정부는 Invert Victoria를 통해 시장조사, 사업자 연결지원,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



○ 서호주(Western Australia, WA)주

- 2009년 이후 세계적인 지하자원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서호주주의 투자 기회 및 투자대상 지역은 크게 확대 되었으나 2013년 이후 자원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지하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서호주 지역에 대한 투자 환경은 긍정적이지는 못하고, 서호주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어 인력조달이 어려워 만성적인 기술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주

- 해마다 다수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3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여 왔으며 호주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농업, 음식, 정보통신기술, 제조 등 다양한 산업을 포용하여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있는 한편 빅토리아주와 같이 매우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음.
- 투자유치 담당 기관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산하의 Invest in NSW가 있음

○ 남호주(South Australia, SA)주

- 남호주주는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 첨단 연구개발 환경, 경쟁력 있는 인건비, 주정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호주 내 풍력 및 태양열 발전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으며, 잠수함, 군함 등의 방위산업과 건강기기, 의료기기, 전자기기 등의 첨단 제조업이 주요 산업 분야임.
- 주정부 산하의 'Investment Attraction South Australia'가 활동중임.

○ 노던 테리토리(Nothern Territory, NT)주

- 노던 테리토리주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농산물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미개발 토지가 많아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수월한 지역임.
- 최근 호주는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NT주와 같은 인구 저밀도 지역은 농업종사 직업군의 이민 기회가 높은 지역임.



나. 호주 투자 인센티브제도

□ 호주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요

- 호주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지역, 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각 관할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호주 정부는 Grant and Assistanc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자가 및 기업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직접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연구개발(R&D) 투자에 관한 세금혜택

- 호주 연방정부는 R&D 투자에 관한 세금 감면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활동도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
 - 이러한 혜택은 호주 산업부 산하 Ausindustry와 호주 국세청(ATO)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신청 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반드시 Ausindustry에 등록해야 함.
- 연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The Research & Development Tax Incentive는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킴.
 - 기업의 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 외국 투자자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원

○ 2018년 7월 기준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는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VCLP)' 하나만 시행하고 있으며, VCLP는



외국인들의 호주 벤처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들이 취득한 이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

-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 내에 등록된 법인이거나 호주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투자규모는 AUD 1,000만 이상이어야 함.

| 인센티브 제도 | 호주 주요 산업 투자유치 여건 |
|---------|---|
| VCLP | 지원대상: 호주 벤쳐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선정기준: 투자규모는 AUD 1천만 이상, 호주 내 법인 또는 호주와 이중과세 협약을 맺은 국가에 설립된 법인 지원방법: 자본이득세 감면 재원: 연방정부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Ausindustry 내・외국기업 동등적용 여부: 부 |

다. 호주의 외국인 투자동향

□ 투자유치 현황

○ 호주의 2017년 투자 유치액은 8,491억 AUD(직접투자)로 전년대비 520억 AUD가 증가했으며, 2018년 5월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직접투자 유치액은 미국이 1,899억 AUD로 가장 많으며,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이 뒤를 있고 있음.(단, 호주 통계청은 국가별 투자 유치액을 완전 공개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

| 순위 | 국 가 명 | 2017년 | |
|----|-------|----------------|--------|
| | | 누적 투자액(백만 AUD) | 비율 (%) |
| 1 | 미 국 | 189,919 | 22.4 |
| 2 | 일 본 | 92,520 | 10.9 |
| 3 | 영 국 | 83,174 | 9.8 |



| 순위 | 국 가 명 | 2017년 | |
|----|-------|----------------|--------|
| | | 누적 투자액(백만 AUD) | 비율 (%) |
| 4 | 네덜란드 | 53,502 | 6.3 |
| 5 | 중 국 | 40,688 | 4.8 |
| 17 | 한 국 | 5,220 | 0.6 |
| - | 기 타 | 252,340 | 29.1 |
| 합계 | | 849,098 | 100 |

- 호주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은 호주의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서비스 산업이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호주 최대의 투자유치 분야는 광업으로서 원자재 가격의 일부 회복세에 힘입어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투자 유치액의 37.1%를 기록함.
- 2017년 투자 유치 동향을 보면 미국, 일본, 영국 3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중국의 대호주 투자 역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호주 정부의 중국 자본 유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7년 호주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일부 영향을 미침.

라. 한국기업 투자 동향

□ 자원 개발 분야에 투자 집중, 도·소매업 비중도 지속 증가

○ 우리나라 기업의 대호주 투자는 광산 개발 등 자원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종합상사의 현지법인 설립이나 건설분야, 상업 부동산 투자, 판매법인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구분 | 우리나라 주요 진출기업 | | |
|-----------------|---|--|--|
| 자원개발기업 | 중부발전, 고려아연, 경동, SK네트웍스, 포스코 등 | | |
| 종합상사 | 포스코대우,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GS글로벌, LG상사, 롯데상사 | | |
| 공기업 | KOTRA,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KEPCO | | |
| 현지판매법인 및 건설업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한전선, LS전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농심, 넥센타이어, 인오션, GS건설 등 | | |
| 금융 서비스업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상선,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판토스 등 | | |

□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한 투자처

- 호주는 세계 8위의 천연자원 보유국으로 석탄, 목재, 구리, 철광석 등을 매장 및 생산하고 있으며, 우라늄 및 금 등의 귀금속류는 세계 최대 공급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라늄은 세계 수요의 46%, 금은 14.3%를 공급하고 있음.
 - 한국의 해외 수입 광산물 중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나라 중 호주는 상대적 으로 국가 리스크가 낮아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



3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호주 투자환경

□ 투자 유치 정책 전반

- 호주 연방정부는 외국기업의 자국 내 투자가 호주의 고용창출, 산업기술 수준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와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접근 방식은 일관된 규제의 적용보다는 개별 건의 유연한 검토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경직된 규제로 인해 호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임.
 - 다만,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국민의 이익과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라디오, TV방송, 일간 신문, 민간 항공산업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투자 관련 법규

- 외국인이 호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판단하는 법규는 외국인인수합병법을 적용함.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외국인인수합병법)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Foreign Takeovers(Notices) Regulations
 - * 상기 법령전문은 www.comlaw.gov.au 에서 검색 가능



-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통상적으로 유한회사(주주의 수가 50명이하인 비상장기업)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등록조건으로최소 1인의 대표이사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일 것이 요구되므로, 본사 요원 1인과 현지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됨.
-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는 연방정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자문기관으로 투자신청서 심사와 승인 여부에 관여하며 일부 외국인 투자 등록을 관리하고 있음.
 - 특히, 외국인이 호주 내 거주용 부동산이나 농지, 토지에 투자할 경우,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등록이 필수임.

□ 자원 부문 투자 규제 법규

-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허가는 각 주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적용이 대동소이함.
 -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주의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하고, 정부 기관지 또는 지역 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과 관련한 내용을 공표(Public notification) 하여야 함.
- 호주 자원정책 관련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 사안으로서 해당 주의 관련 법규를 1차적으로 적용하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 시 연방법을 우선 적용함.
 - 호주 채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호주(WA)주의 관련 법규들이 호주의 자원정책 관련 법규로서 좋은 예시가 됨.
 - Mining Act 1978(채광법)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환경보호법)
 - Land Administration Act 1997(토지관리법)
 - Native Title Act(NTA) 1993(원주민 토지 보호법)
 - Offshore Minerals Act 1994(the OM Act, 역외 광물 자원 보호법)



□ 환경 관련 규제

-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이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에서 환경 보호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은 물론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으로서, 호주 정부의 환경 정책은 채광과 원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방지 및 평가와 훼손된 지역의 환경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함.
- 호주의 각 주 및 행정자치구역 정부들은 역내는 물론이고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해수역에 존재하는 광물자원 관리 및 환경보호에 대한 우선 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은 2가지가 있음.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the EPBC Act,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
 - Petroleum(Submerged Lands) Act 1967(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

4 호주 투자 진출 형태 7



가. 기업법(Corporation Act 2001)상 구분

- □ 비공개 회사(Proprietary Company, Pty Ltd)
-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비공개 회사는 주식, 사채 및 기타 증권의 공모가 금지되는 회사로서, 주주가 5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최소한 1명의 총 책임자 등록 및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임원을 두어야 하고, 회사명에 항상 'Proprietary' 혹은 'Pty'를 붙여야 하며, 재무제표는 세무신고서를 제외하고는 공표 의무 없음.



□ 공개 회사(Public Company, Limited 또는 Ltd)

-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공개 법인으로 주식의 공모가 원칙이며 발행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등록하게 되고, 호주 거주자 2명을 포함한 최소 3명의 임원을 두어야 함과 동시에, 1명의 호주 거주인을 총무로 두어야 함.
 - 무한책임회사와 보증책임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회사명에 항상 'Limited' 혹은 'Ltd'라는 명칭을 포함해야하고, 재무제표의 공개의무, 감사 등 많은 규제를 적용받게 됨.

□ 무한 책임 회사(No Liability, NL)

○ 광산 및 석유탐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회사명에 항상 'No Liability' 또는 'NL'이라는 명칭을 포함해야함.

나. 투자형태별 구분

□ 현지법인(Pty Limited): 현지법상 비공개 회사

- 현지법인은 'Pty Limited'로 표시하게 되며 호주의 등록기관인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등록을 하고, 등록 완료시 ACN(Australian Company Number)를 부여받음. 한국에서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외투법인으로 구분해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있음.
- O Pty Limited는 호주 상법(Coporations Act)상 비상장법인을 의미하며 회사 설립시 기본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 대표(Director)는 1인 이상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주는 법인 또는 개인 모두 가능
 - 최소자본금은 1AUD 이상(1주도 가능)



□ 대표사무소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회사법상 명시된 개념은 아니나 호주 기업의 주요 사업체 운영 행태 중 하나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대신 영업활동 지원 등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직원급여의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만 있음.

□ 외국법인(Australian Registered Business Number)

○ 실제 사업 형태는 현지법인과 유사하나 구분상 지사(외국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로서, 설립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음.

(출처: KOTRA 시드니 무역관 호주 국가정보, 2018 호주 진출전략)





부로 '

무역투자 관련 호주 주요 유관기관 웹사이트

| 기 관 명 | 업 무 | 웹사이트 | |
|---|-----------------------|-------------------------------|--|
| AUSTRADE | 국가 무역투자 진흥 | www.austrade.gov.au | |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 외교통상부 | www.dfat.gov.au | |
| Australian Customs | 관세청 | www.customs.gov.au | |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 농업수자원부 | www.agriculture.gov.au | |
| Australian Taxation Office | 국세청 | www.ato.gov.au | |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통계청 | www.abs.gov.au | |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 www.nsw.gov.au | |
| 빅토리아 주정부 |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 www.vic.gov.au | |
| 퀸즈랜드 주정부 |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 www.qld.gov.au | |
| 서호주 주정부 |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 www.wa.gov.au | |
| 남호주 주정부 |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 www.sa.gov.au | |
| ACT 주정부 |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 www.act.gov.au | |
| 노던테리토리 주정부 |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 www.nt.gov.au | |
| 태즈마니아 주정부 | 지역 내 무역투자 진흥 | www.tas.gov.au | |
| ASIC | 증권투자위원회(기업등록) | www.asic.gov.au | |
| ASX | 호주 증권거래소 | www.asx.com.au | |
| Standards Australia | 호주 국가표준 감독 | www.standards.org.au | |
| IP Australia | 지재권 감독 정부기관 | www.ipaustralia.gov.au | |
|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해외투자 승인기관 | www.firb.gov.au | |
| Clean Energy Council | 녹색산업대표단체 | www.cleanenergycouncil.org.au | |
| Sustainable Business Australia | 녹색산업대표단체 | www.sba.asn.au | |
| Energy Supply Association of Australia | 에너지 공급기업 대표단체 | www.esaa.com.au | |
| AusTender | 호주 정부 조달 사업 안내 시스템 | www.tenders.gov.au | |

(출처 : KOTRA 시드니 무역관 국가정보)



부로 2

호주의 한국기업 진출현황

| 회 사 명 | 모 기 업 | 업 | 종 | 제 품 명 | 진출시기 |
|---------------|---------|-----|----|----------|------|
| 대한항공 시드니지점 | 대한항공 | 운 | 송 | 항공운송 | 1990 |
| GS글로벌 오스트레일리아 | GS그룹 | 유 | 통 | 철강, 자원, | 1988 |
| GS건설 호주법인 | GS그룹 | 건설 | 설업 | 인프라건설 | 2017 |
| KEB하나은행 시드니지점 | KEB하나은행 | 금 | 융 | 은행업 | 2014 |
| LG상사 호주법인 | LG상사 | 상 | 사 | 광산투자 | 1983 |
| LS전자 호주법인 | LS전자 | 제 | 조 | 가전제품 | 1987 |
| SK네트웍스 호주자원법인 | SK네트웍스 | 광 | 업 | 철광석, 석탄 | 1990 |
| 금호타이어 | 금호타이어 | 제 | 조 | 타이어 | 1975 |
| 기아자동차 호주판매법인 | 기아자동차 | 제 | 조 | 자동차 | 2006 |
| 농심 호주법인 | 농심 | 판 | 매 | 식품 | 2014 |
| 넥센타이어 시드니지점 | 넥센타이어 | 제 | 조 | 타이어 | 2013 |
| 포스코대우 | 대우 | 무 | 역 | 종합품목 | 1968 |
| 대한전선 호주법인 | 대한전선 | 제 | 조 | 전선 | 2006 |
| 모트렉스 오스트레일리아 | 모트렉스㈜ | 제 | 조 | 자동차부품 | 2012 |
| 삼성물산(건설부문) | 삼성 | 건 | 설 | 설계 및 시공 | 2012 |
| 삼성물산(상사부문) | 삼성 | 도스 | 소매 | 무역 | 2011 |
| 삼성전자 호주법인 | 삼성전자 | 제 | 조 | 전자제품 | 1987 |
| 신한은행 시드니지점 | 신한은행 | 금 | 융 | 은행업 | 2016 |
| 아시아나항공 시드니지점 | 아시아나 | 운 | 송 | 항공운수 | 1995 |
| 오스템 호주법인 | 오스템 | 제 | 조 | 임플란트 | 2007 |
| 와이지원 | YG-1 | 제 | 조 | End Mill | 2001 |
| 우리은행 호주지점 | 우리은행 | 금 | 융 | 은행 | 2001 |
| 이노션 월드와이드 | 이노션 | 마케팅 | | 광고 마케팅 | 2008 |
| 일진 호주법인 | 일진글로벌 | 제 | 조 | 자동차부품 | 2002 |
| 판토스 호주법인 | 범한 판토스 | 운 | 수 | 물류 | 2008 |
| 팬오션 멜버른사무소 | 팬오션 | 운 | 수 | 해운 | 1984 |
| 포스코 오스트레일리아 | 포스코 | 광 | 업 | 철광석, 석탄 | 1981 |



| 회 사 명 | 모 기 업 | 업 종 | 제 품 명 | 진출시기 |
|---------------|--------------|-----|-------|------|
| 한국관광공사 시드니지사 | 한국관광공사 | 기 타 | 홍보 | 1979 |
| 한국광물자원공사 호주법인 | 한국광물 자원공사 | 광 업 | 광산투자 | 1995 |
| 대한항공 시드니지점 | 대한항공 | 운 송 | 항공운송 | 1990 |
| 한국산업은행 호주지점 | 한국산업은행 | 금 융 | 은행 | 2015 |
| 한국전력공사 호주법인 | 한국전력 | 에너지 | 광산투자 | 2008 |
| 한국타이어 오스트레일리아 | 한국타이어 | 제 조 | 타이어 | 1987 |
| 현대모비스 호주법인 | 현대모비스 | 제 조 | 자동차 | 2004 |
| 현대상선 멜버른사무소 | 현대상선 | 운 송 | 해운운송 | 2004 |
| 현대상선 호주법인 | 현대상선 | 운 송 | 해상운송 | 2008 |
| 현대자동차 호주판매법인 | 현대자동차 | 제 조 | 자동차 | 2003 |
| 현대종합상사 | 현대종합상사 | 도소매 | 종합품목 | 1981 |

(출처: KOTRA 시드니 무역관 국가정보)



부록 3

한 · 호주 조세조약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 지를 위한 협약 체결

(1982.07.12. 캔버라에서 서명, 1984.01.01. 발효)

제1장 협약의 범위

제 1 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대상조세】

-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및
 - (3) 주민세
 - 나. 호주에 있어서는 호주의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가능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를 포함)
- 2.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를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각 역년의 말에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한 각 체약국의 법에 있었던 실질적 변화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장 정 의

제3조【일반적 정의】

-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가. "호주"라 함은 호주연방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 (1) 노오폭섬의 영토
 - (2) 크리스마스섞의 영토
 - (3) 코코스(킬링)제도의 영토
 - (4) 아쉬모아와 카르티에 제도의 영토
 - (5) 코럴해 제도 영토 및
 - (6) 대륙붕의 해저 및 하충토의 자연자원의 이용을 취급하는 호주의 또는 호주의 주나 지방의 또는 위에서 언급한 영토의 법이 국제법에 따라 합당하게 당분간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또는 상기 영토의 영역에 인접한 지역
 - 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저와 하층토 및 그들의 자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호주 또는 한국을 의미한다.
 - 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인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있는 단체와 유사한 실체를 의미한다.
 - 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 사.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호주의 조세 또는 한국의 조세를 의미한다.
- 아. "호주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인, 호주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 자.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인, 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호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한다.
- 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국제운수"라 함은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장소에만 한정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이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을 의미하며 또한 이 목적상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체약국에 있는 다른 장소에 양륙하기 위하여 운송되는 여객, 가축, 우편물, 물품 또는 상품의 수송은 동 체약국에 있는 장소에만 한정되는 운행으로 취급된다.
- 2. 이 협약에서 "호주의 조세" 및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 또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동 용어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

- 1. 이 협약의 목적상 인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 가. 호주의 경우에는 동인이 호주의 조세의 목적상 호주의 거주자인 때 및 나. 한국의 경우에는 동인이 한국의 조세의 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 때
- 2. 인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있어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



- 3. 본조의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민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나.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어느편에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본항의 목적상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하게 되어 있는 체약국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개인의 시민권 또는 국적이고려된다(동 개인이 일방체약국의 시민 또는 국민인 경우).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 5 조【고정사업장】

-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 사. 농업, 목축업 또는 임업용 토지
- 3. 건축장이나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에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된다.



- 4. 기업은 단지 다음 사항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가. 동 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보관,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동 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의 재고의 보유
 -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동 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의 재고의 보유
 - 라. 동 기업을 위한 물품이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 마. 광고나 학술적 연구와 같은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 5. 다음의 경우 기업은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또 동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동 기업이 건축장이나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동 체약국에서 감독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 나. 주요장비가 자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이용하는 또는 그러한 탐사나이용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 기업과의 계약에 의하거나 동 계약을 위하여 또는 동 계약하에 동 체약국에서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사용되고 있는 경우
- 6.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은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 있는 동 기업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 가. 동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한 물품이나 상품의 구매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인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기업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또 평소에 이를 행사하는 경우 또는



- 나. 그와 같이 활동함에 있어서 동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기업을 위하여 동기업에 속하는 물품이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단, 이 규정은 그와 같이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품이나 상품에 관하여서만 적용된다.
- 7. 기업인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된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일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서 그 이유만으로써 그 인이 그외 통상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또는(고정사업장을 통하여서나 기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동 법인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게 하지아니하다.
- 9. 제1항 내지 제8항에 걸쳐 규정된 원칙은 이 협약의 제11조 제6항과 제12조 제5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양 체약국 이외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어느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아닌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적용된다.

제 3 장 소득에 대한 과세

제6조【부동산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타 건조물을 포함함)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토지"라 함은 문제되는 토지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토지가 갖는 의미를 가지며 동 토지의 임대차권과 개량여부에 상관없이 동 토지내에 또는 동 토지위에 있는 물권 또는 직접적 권익을 포함한다. 광상,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또는 이용장소의 운영에 대한 또는 동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 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동 광상, 유전이나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물권 또는 직접적 권익으로 간주된다.
- 3. 제1항의 규정은 토지로부터의 기업의 소득 및 자유직업적 용역의 이행에 사용된 토지로부터의 소득에도 또한 적용된다.

제 7 조【사업소득】

-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기업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행정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와 동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경비를 지불한 독립된 실체라고 가정할 경우에 공제될 수 있는 경비인 기업의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밖에서 발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인정된다.



- 4. 어떠한 이윤도 기업을 위한 고정사업장에 의한 물품이나 상품의 단순한 구입을 이유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 5.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의 정확한 금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확정이 예외적으로 곤란할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에게 이용가능한 정보가 허용하는 한 동 체약국의 관계법이 본조의 제 원칙에 따라서 적용된다면 본조의 어느 것도 인의 조세의무의 결정에 관련되는 동 체약국의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선박 및 항공기】

-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2. 제1항의 규정은 또한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 부터 발생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제 9 조【특수관계기업】

- 1. 일방체약국의 과세관할권에 속하는 인과 기타의 인이 관련되는 경우 및 만약 그러한 인들이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상호거래하는 무관계한 인들이라면 적용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상업상 및 재정상의 관계와 다른 그들간의 상업상 및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서의 제 조건이 상기 관계된 인들간에 적용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제 조건이 없었다면 이들 인중 하나의 인에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제 조건때문에 그와 같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윤은 동인의 이윤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2. 이 협약의 목적상 양인중 일방의 인이 타방의 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제3자인 인이나



인들이 동 양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또한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동 일방의 인은 동 타방의 인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 3. 본조는 양 체약국이 조세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4.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체약국에 의하여 마치 본조가 발효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본조의 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동 체약국에서 조세를 부과받은 대상인 이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역시 포함되어 이에 따라 과세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만일 동기업들간에 적용되는 제 조건이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상호간에 거래하는독립적 기업들간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면동 타방체약국의동 기업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이윤인경우,그렇다면동 일방체약국은동 일방체약국에서 그러한 이윤에부과되는조세의 액수에 적절한조정을 가하도록한다.이러한조정을결정함에 있어서소득의 성격에 관련된이 협약의 기타규정에 합당한배려를하도록하고 또한이 목적을 위하여양 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은필요하다면상호협의한다.

제10조【배당】

-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배당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본조에 있어서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과 또한 배당을 분배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한 과세취급을 받는 기타 소득을 의미한다.



-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배당을 수익할 권리가 있는 인이 동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동 배당이 지불되는 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5.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이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배당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은 동 배당이 지불되는 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본항은 제4조제1항으로 인하여 호주의 거주자이고 또한 동항으로 인하여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6. 이 협약에 있어서 어느 규정도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동 일방체약국과 관련하여 제2조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그러한 추가조세는 한 소득연도의 동 타방체약국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동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를 초과하는 액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유보 이윤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는 마치 동 법인이 본항에 언급된 추가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동 법인이 본조 제2항에 따라서 동 추가조세의 액수와 동일한 조세를 납부하게 되었을 만큼의 액수의 배당을 지불한 것과 같이 계산된다.



제11조【이자】

-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그러한 이자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에서나 동 체약국의 일부 지방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 에서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4. 본조에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는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이자와 또한 동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과세법에 의하여 금전대부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기타 소득은 물론 기타 형태의 부채로 부터의 이자를 포함한다.
-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에 대한 수익적 권한이 있는 인이 동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가 지불되는 원인이 되는 채무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각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6. 이자지불인이 일방체약국 자체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지방당국이거나 또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일 때에는 동 이자는 동 체약국 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이자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에 또는 양 체약국외에 동 이자가 지불되는 부채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이자지불인과 이자의 수익권자 사이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지불된 이자의 액수가 동 이자의 지불원인이 된 채무를 고려하여 동 납세자와 그러한 관계없이 그러한 수익권자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후자의 액수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그 경우에 있어서 지불된 이자외 액수의 초과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존속 하나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12조【사용료】

-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1) 영화필름
 -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 적인 억제
-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익권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사용료가 지불된 원인인 재산권이다.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5. 지불인이 일방체약국 자체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하부조직이거나 또는 동 체약국의 지방당국이거나 또는 제4조제1항으로 인하여,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일 때에는 동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사용료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방체약국내의 또는 양 체약국외에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동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 6. 사용료 지불인과 사용료에 대한 수익적 권한을 가진 인 사이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때문에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가 동 사용료가 지불된 목적을 고려하여 지불인과 그러한 관계없이 그러한 권한을 갖게된 인에 의하여 합의되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후자의 액수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불된 사용료의 액수의 초과분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존속하나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13조【재산의 양도】

-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의 소득은 동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본조의 목적상
 - 가.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토지의 임대차 또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기타 직접적인 이익
 - (2)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
 - (3) 자산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일방체약국에 있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일방체약국에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있어서의 주식 또는 유사한 이익
 - 나. 부동산은 다음 장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1) 동 부동산이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으로 구성되는 경우, 동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체약국
 - (2) 동 부동산이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구성되는 경우, 동 자연자원이 소재하고 있거나 또는 탐사가 실시되는 체약국 및
 - (3) 동 부동산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토지내의 또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 또는 일방체약국에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거나 탐사하는 권리로 전적으로 또는 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법인의 주식 또는 유사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 법인의동 자산 또는 주요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동 체약국
-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자유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에 관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이 타방체약국에 있어서 동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동인이 그와 같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동 소득중 동 고정 시설로부터 행하여진 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분에만 한정된다.
-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계리사의 독립적 활동의 행사에 있어서 뿐 아니라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의 영위에 있어서 수행되는 용역을 포함한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다른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동 보수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하여 발생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가. 동 수취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연도에 있어서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복수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또한
 - 나.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불되고 또한



- 다. 동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 동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과세할 수 있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
- 3. 본조의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서 운행된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시행된 고용에 관한 보수는 동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불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예능인】

- 1.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출연자 또는 음악가 또는 체육인과 같은)으로서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그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동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2. 예능인이 동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제공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예능인 자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소득은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예능인의 활동이 행하여진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와 같은 예능인으로서의 동인의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동인의 동 일방체약국에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의 또는 동국의 정치적 하부 조직이나 지방당국중 하나의 공적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의 예능인의 활동과 같은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 예능인 자신에게 발생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또는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중 하나의 공적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또는 동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비영리기관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연금 또는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로서의 적절하고 충분한 고려에 대한 반대지불을 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이나 특정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시기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소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제19조【정부용역】

1.

- 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그 지방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연금이나 보험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또한 동 개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시민인 자 또는
 - (2) 동 용역을 제공하는 목적만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 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동 국가 또는 하부조직이나 당국에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지불된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은 동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또한 동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시민의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 4.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하여 그리고 호주의 경우 호주 준비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0조【교직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또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 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그와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수나 연구 또는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와 같은 교수나 연구에 대한 동인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 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21조【학생 및 훈련생】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자기의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으로 타방체약국에 임시로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기의 생계유지 또는 교육의 목적 으로 동 타방체약국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지급금을 수취하는 경우 동 지급 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제22조【기타소득】

- 1. 본 협약의 상기 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2.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은 동 소득이 생긴 동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동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3조【소득의 원천】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중 1개 또는 1개이상의 조문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제24조 및 동 타방체약국의 소득세법상의 목적상 동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제24조【이중과세의 방지방법】

1. 호주밖의 국가에서 납부된 조세의 호주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허용과 관련된 수시 유효한 호주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호주의 거주자인 인이 한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서든지, 한국의 법에 의하여 및 본 협약에 따라서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동 한국의 조세가 납부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될 호주의 조세에 대하여세액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동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의하여 지불되는 배당인 경우,동 공제는동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대하여동법인에 의하여당부되는조세에 추가되는동배당과 관련된조세만을 고려하도록하다.



2. 한국의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본항에 따라서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하는데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호주내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서든지 호주의 법에 의하여 또 이 협약에 따라서 납부하는 호주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 관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호주내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한국의 조세의 대상이 되는 전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가. 제4항의 목적상 "면제된 한국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해당법규에 따라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호주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된 이자의 경우, 만약 동 이자가 한국의 법에 의하여 및 이 협약에 따라 그렇게 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제11조 제2항에 언급된 조세가 동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다면 한국의 조세로서 지불하게 되었을 금액 및
- (2) 호주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된 해당법규에 따라 한국의 조세로 부터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사용료의 경우, 만약 동 사용료가 한국의 법에 의하여 및 이 협약에 따라 그렇게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언급된 조세가 사용료의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한국의 조세로서 지불하게 되었을 금액 또는 사용료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경우, 그 추가금액
- 나. 세항(가)에 있어서 "해당법규"라 함은 본항의 목적상 한국의 재무부 장관과 호주의 재무부장관간에 수시 교환되는 공한으로 합의되는 한국의 조세에 관한 한국의 법의 제 규정을 의미한다.



4.

가. 제1항의 목적상 면제된 한국의 조세금액은 납부된 한국의 조세액과 동등한 액으로 간주된다.

나. 조세액

- (1) 세항3가(1)에 언급된 이자의 금액은 동 이자에 관하여 면제된 한국의 조세의 액수만큼 증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2) 세항3가(2)에 언급된 사용료의 금액은 동 사용료에 관하여 면제된 한국의 조세의 액수만큼 증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5. 제3항과 제4항은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이후 제5역년의 6월 30일에 끝나는 소득연도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교환된 공한으로 양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는 보다 후일의 일자 이후의 소득연도에 발생된 소득에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5조【상호합의 절차】

- 1. 인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동인에게 본 협약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가 되거나 또는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동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이 권한있는 당국에 동인의 사건을 제소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가되는 조치에 관한 첫번째 통지로부터 3년이내에 제소되어야 한다.
-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합당한 것으로 동 당국에게 인정되는 경우 또한 동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동 협약에 따르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룩된 해결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곤란이나 의문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4조세항(3)(나)에 기술된 개인이 양 체약국중 어느



체약국과 보다 더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체약국에 동조제4항에 기술된 개인이 아닌 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통신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교환】

-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접수된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동 조세에 관한 집행이나소추 또는 동 조세에 관련된 소원의 결정에 관계되는 인 또는 당국 (협원과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되며 또한 그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가. 동 일방체약국의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
 - 나. 동 일방체약국의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무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에 있어서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발효】

-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한으로 이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약은 이를 통보중 후자의 통보가 있었던 달이후 두번째 달의 첫날에 발효된다.
-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 가. 호주에 있어서
 - (1) 비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및
 - (2) 기타 호주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나. 한국에 있어서

- (1) 비거주자에게 지불되거나 대변 기입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및
- (2) 기타 한국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29조【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하나, 호주정부나 한국정부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타방정부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로 협약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호주에 있어서

- (1) 비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에 관하여는 동 종료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및
- (2) 기타 호주의 조세에 관하여는 동 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7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나. 한국에 있어서

- (1) 비거주자에게 지불되거나 대변 기입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에 관하여는 동 종료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및
- (2) 기타 한국의 조세에 관하여는 동 종료통고가 있었던 해 다음의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소득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2년 7월 12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호주정부를 위하여



의 정 서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는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의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규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 1. 제2조와 관련하여 본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방위세에도 적용된다.
- 2. 제7조와 관련하여 본 협약은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데서 나오는 기업의 이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제10조제6항과 관련하여 양 체약국의 정부는 동항에 언급된 본 협약이 서명되는 당시에 적용되는 추가조세는 호주의 경우 1936년도 소득세부과 세법의 조항 제128T조에 따라서 호주의 거주자가 아닌 법인의 경감과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5퍼센트의 조세뿐임을 인정한다.
- 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양 체약국 정부는 호주거주자인 법인이 본 협약의 서명시에 시행되고 있는 호주의 과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동 법인의 조세부과에 있어서 동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접수된 배당에 관하여 동 호주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조세의 평균비율로 평가된 할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호주가호주거주자인 법인에게 동 법인의 과세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되고 동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된 배당에 관하여 동 법인에의하여 납부되는 조세의 평균비율로 평가된 할인을 허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경우, 양 체약국 정부는 호주에 의하여 배당에 관한 동국의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게 될 세액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기 위하여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 5. 제24조제2항과 관련하여 본 협약의 서명이후 한국이 법인간 배당에 대하여 조세의 경감을 하게 되거나 또는 타국과의 협약에서 한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이 지불된 이윤에 대한 동 타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데 합의하는 경우 한국은 즉각적으로 호주에게 통보하고 배당에 대한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한국에 의하여 허용하게 될 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시작한다.
- 6. 일반적으로 호주와 제3국간에 추후 체결되는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한 협약에서 호주가
 - 가. 호주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또한 제3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배당에 대한 호주의 조세비율을 15퍼센트 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 나. 무차별에 관하여 취급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호주정부는 즉각적으로 한국정부에게 통보하고 동 제3국에 관하여 제공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한국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협의를 시작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2년 7월 12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호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044 - 204 - 2814 팩스: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행정사무관 이상언 국세조사관 이웅진 국세조사관 김창희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25044-204-281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세정전문가 양성교육 연구보고서

2018